



리걸테크 센터 개원세미나
리걸테크: 현황과 과제

리
걸
테
크
센
터
개
원
세
미
나

리
걸
테
크
::
현
황
과
과
제

리걸테크 센터 개원세미나

리걸테크: 현황과 과제



일시 2023년 **6월 2일** 14:00-17:00
장소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401호
주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리걸테크 센터



리걸테크 센터 개원세미나 “리걸테크: 현황과 과제”

일시: 2023년 6월 2일 14:00-17:00

장소: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401호

주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리걸테크 센터

[전체사회] 모지안 연구원(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리걸테크센터)	
14:00-14:20	[축사] 이기수 명예교수(한국법학원 원장) 하태훈 명예교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정승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강병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개회사] 이병준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 리걸테크센터 센터장)
[사회] 박노형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20-14:50	[기조 발제] 안기순 소장(로톡 법률 AI연구소) - 주제: 한국 리걸테크의 역사와 현황
14:50-15:10	휴 식
15:10-16:10	['현황과 과제' 발표] Christoph Busch(Osnabrück University) - 주제: Legal Tech and Legal Education in Germany 홍영기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 변호사시험의 과거, 현재, 미래 김명수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주제: 한국의 리걸테크 현황과 법학교육의 변화
[사회] 이병준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10-17:00	[종합토론]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석구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도엽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기조 발제

한국 리걸테크의 역사와 현황

안기순 소장
(로톡 법률 AI연구소)

고려대 리걸테크 센터 개원세미나

한국 리걸테크의 역사와 현황

로앤컴퍼니 법률AI연구소장/변호사

안 기 순

2023.06.02.

 Law&Company

발표자 소개

안 기 순

현 로앤컴퍼니 이사 / 법률AI연구소장 / 변호사

- 전 텍스트팩토리 대표이사
- 전 로앤비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사법연수원 27기
- 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실무위원
- 현 열린정부위원회 민간위원
- 전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Contents

- 01 리걸테크의 정의와 분야
- 02 리걸테크의 역사
- 03 리걸테크의 현황
- 04 리걸테크와 규제
- 05 리걸테크의 과제

* 발표에 포함된 회사와 서비스들은 발표자의 경험과 지식 범위내에서 소개해드리는 것일 뿐 한국 리걸테크의 역사를 이루는 회사나 서비스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그 내용도 제한적이고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1 리걸테크의 정의와 분류

- LegalTech
 - Legal Technology의 약어로,
 - ICT나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 법률서비스를 효율화 하거나 법률산업을 혁신하는 것 또는 이를 통한 서비스를 의미
- LegalTech vs RegTech vs LawTech

Category	LegalTech	RegTech	LawTech
Focus	Legal services and the legal industry	Regulatory compliance	Access to legal services
Users	Lawyers, businesses, individuals	Businesses	Individuals
Goals	Improve efficiency,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Help businesses comply with regulations	Help people access legal services

1-1 리걸테크의 정의와 분류

Stanford Codex 분류 (Codex Techindex)

Analytics	Compliance	Document Automation
Legal Education	Legal Research	Marketplace
Online Dispute Resolution	Practice Management	eDiscovery

출처 : <http://techindex.law.stanford.edu/>

한국 리걸테크 분류

법률정보검색	법률플랫폼	사건관리솔루션
법률문서자동작성	전자계약	입법분석
기업법무시스템	소송결과예측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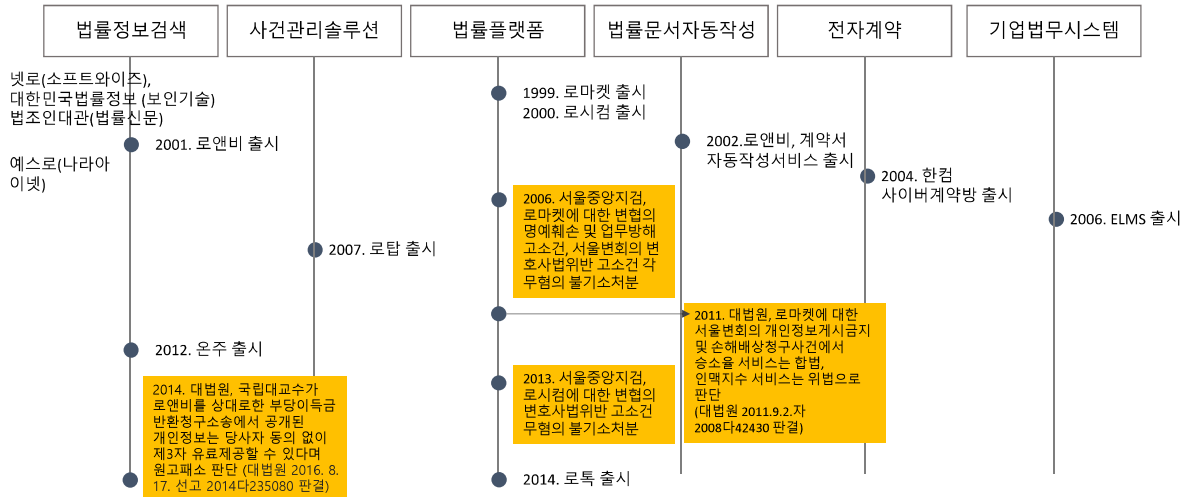
2-1 한국 리걸테크의 역사

한국 리걸테크의 시대구분

시기	구분	특징
2000년 이전	태동기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 법률문서 디지털화 판례검색프로그램 등장
2000년~2014년	초기 발전기	법률정보검색서비스 및 사건관리 프로그램 출시 변호사광고규정 신설 및 법률플랫폼의 명명 정부 법령/판례 서비스 및 전자소송의 도입
2015년~2022년	성장기	리걸테크 스타트업 창업과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 출시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출범 대한변협회의 리걸테크 규제를 둘러싼 분쟁
2023년 이후	도약기(?)	리걸테크에 AI 본격 도입, 리걸테크 규제개선(?) 법제도 변화 (eDiscovery, 집단소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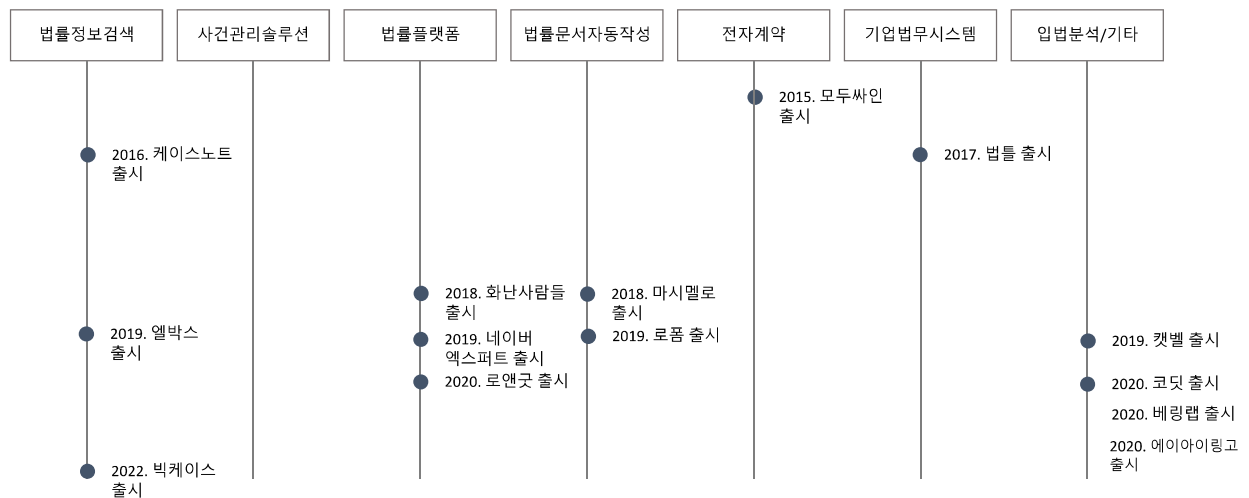
2-2 한국 리걸테크의 역사

2000년 ~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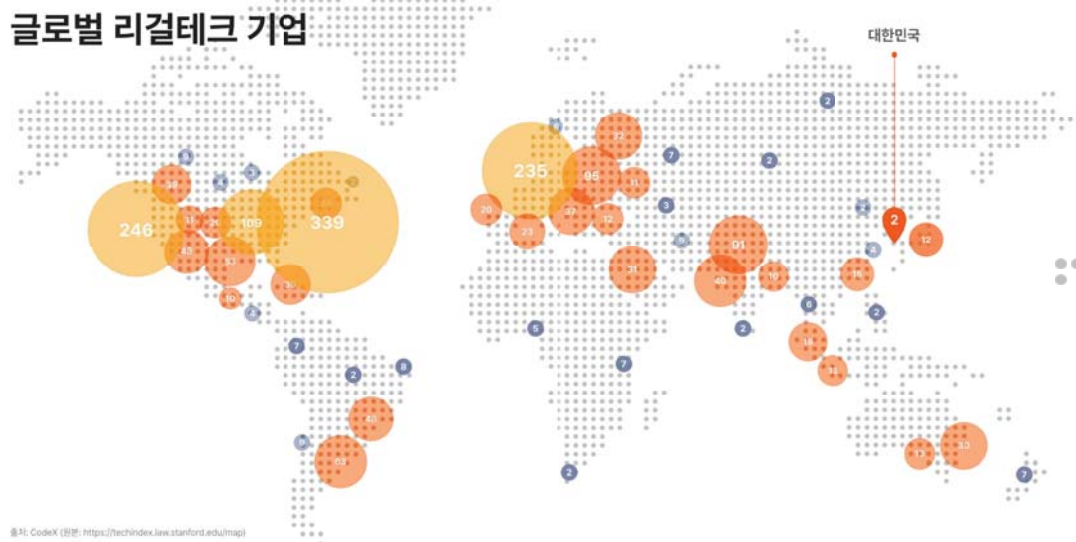


2-3 한국 리걸테크의 역사

2015년 ~ 2022년



3-1 한국 리걸테크의 현황



Copyright © Law&Company. All rights reserved.

3-1 한국 리걸테크의 현황

■ 해외와 비교한 한국 리걸테크 현황

리걸테크 분야 투자 규모



출처: CB Insights Database (2020)

리걸테크 기업 수



출처: Tracxn Sector Report - Legal Tech (2016, 2022) /
글로벌리츠연구소 리걸테크산업연구회 회원/ 기준 (2022)

리걸테크 유니콘 현황



출처: Tracxn Sector Report - Legal Tech (2019.5월)

3-1 한국 리걸테크의 현황

■ 성장 잠재력 큰 법률서비스 시장

2021년 기준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일본
인구 1인당 법률 비용	1,389,565원	1,104,106원	411,204원	183,327원	103,043원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251명	320명	505명	1,646명	2,904명
변호사 수 증가율*	0.2%	2.9%	0.2%	7.0%	2.7%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463.5조 원	75.4조 원	34.6조 원	9.8조 원	12.9조 원***
인구 수	3억 3,291만 명	6,820만 명	8,390만 명	5,161만 명	1억 2,536만 명

*16~21년 기준; 한국 통계청; American Bar Association;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Deutscher Anwaltverein;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
**Statista; 일본변호사협회; 일본 통계청; 한국 통계청
***2019년 기준

3-1 한국 리걸테크의 현황

■ 한국리걸테크산업협의회



2020.12.9. 출범

법률스타트업 중심으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에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출범



공동협의회장

법무법인 린 부문장/코스포 이사 구태언 (우)
로앤컴퍼니 대표 김본환 (좌)



30여개 회원사

정회원 10개사, 준회원 15개사
옵저버 6개사

3-1 한국 리걸테크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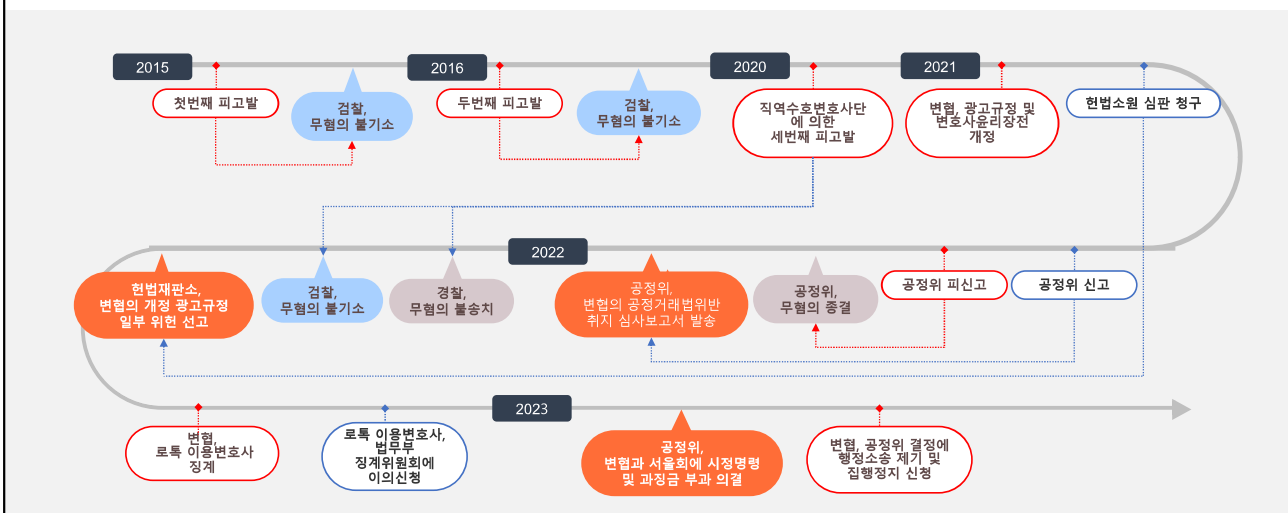
■ 한국 리걸테크 기업 및 서비스 현황

마켓플레이스	소송결과예측	법률정보검색	문서/사건관리	법률문서자동작성	법률문서자동분석	전자계약	기타	
로톡 (로엔컴퍼니) 블루의변호사 (코리아를 넷플렉스부선) 화난사람들 (화난사람들)	가업결정예측 (마니맥) 형량예측 (로엔컴퍼니)	유렉스 (인텔리온)		내용증명의힘 (고소하계) 마시멜로 (리갈인사이트) 마니맥 (보리움법률사무소) 로종 (아미쿠스텍스) 헬프미 (헬프미)			켓벨 (켓벨컴퍼니)	B2C
로앤굿 (로앤굿) 로톡비즈 (로엔컴퍼니)					정관분석 (코메이크)	클로써인 (글로텐즈) 모두써인 (모두써인) 코메이크 (코메이크)	법들 (법들) 주주리걸 (코드박스) 코딩 (코딩) 중기케어 (크원스) 켓벨	B2B
	형량예측 (로엔컴퍼니)	로앤비 (로앤비) 리갈엔진 (카리움) 리걸서치 (리걸테크) 빅데이터 (로엔컴퍼니) 엘박스 (리걸텍) 케이스노트 (케이스노트)	로탐 (로타임비즈텍) 로테스크 (현우엘앤비) 로어드민 (솔루션업그레 이드)		알파로 (인텔리온)		베링햄 (베링햄) A링고 (오토란)	B2L

* 서비스에 대한 분류는 발표자가 임의로 한 것이며, 열거한 기업에는 리걸테크산업협회의 소속이 아닌 기업도 포함하고 있음

4-1 한국 리걸테크와 규제

■ 로톡과 변협간 갈등



4-1 한국 리걸테크와 규제

■ 현행 변호사법 규정

제23조(광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변호사들이 스스로 광고할 자유 폭넓게 보장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변호사의 유상소개 행위에는 “대가성”과 “특정성”이라는 요건 필요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4-1 한국 리걸테크와 규제

■ 변호사법상 광고조항의 개정 연혁

2000.1.28. 전부개정 – 변호사광고규정의 신설

- 변호사 선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사건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 업무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
-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변호사협회가 구체적인 광고매체의 종류, 광고회수, 광고료의 총액, 광고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음.

2007.1.26. 일부개정 – 변호사광고규제의 완화

- 대한변협에 위임된 변호사광고 제한의 사유가 지나치게 넓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역할이 미흡함에 따라 사건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병폐의 원인이 될 수 있고,
- 광고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직접규정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신설하되, 법률로 금지된 광고를 제외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적 통제 보장
-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1 한국 리걸테크와 규제

■ 현행 변호사법제34조 제1항의 해석

과금방식	정액		정률	
	의뢰인	변호사	의뢰인	변호사
소개 중개 알선 수수료	X	X	X	X
시스템 서비스 사용료	X	O	X	X
PG 수수료	N/A	N/A	X	예외적 허용
광고료	N/A	O	N/A	X

※ O 가능, X 불가능, N/A 해당없음

4-1 한국 리걸테크와 규제

■ 법무부 입장

광고형 플랫폼과 중개형 플랫폼의 구분

구분	광고형 플랫폼	중개형 플랫폼
정의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와 이용자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료를 취득하는 형태	변호사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업체는 그 계약 체결의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형태
변호사법 위반 여부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으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음	플랫폼 업체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한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고,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게 되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로톡에 대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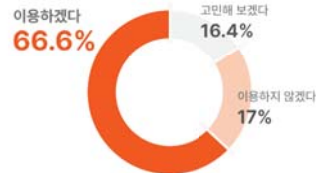
-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으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음
-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

* 2021.8.24. 법무부 언론브리핑시 배부한 보도자료

4-1 한국 리걸테크와 규제

법률플랫폼 이용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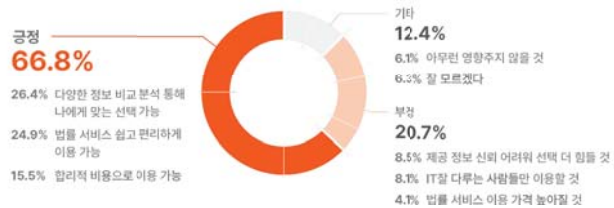
법률 플랫폼 이용 의향*



로톡이 아니었다면 고려했을 변호사 조력 정도*



법률 플랫폼 이용이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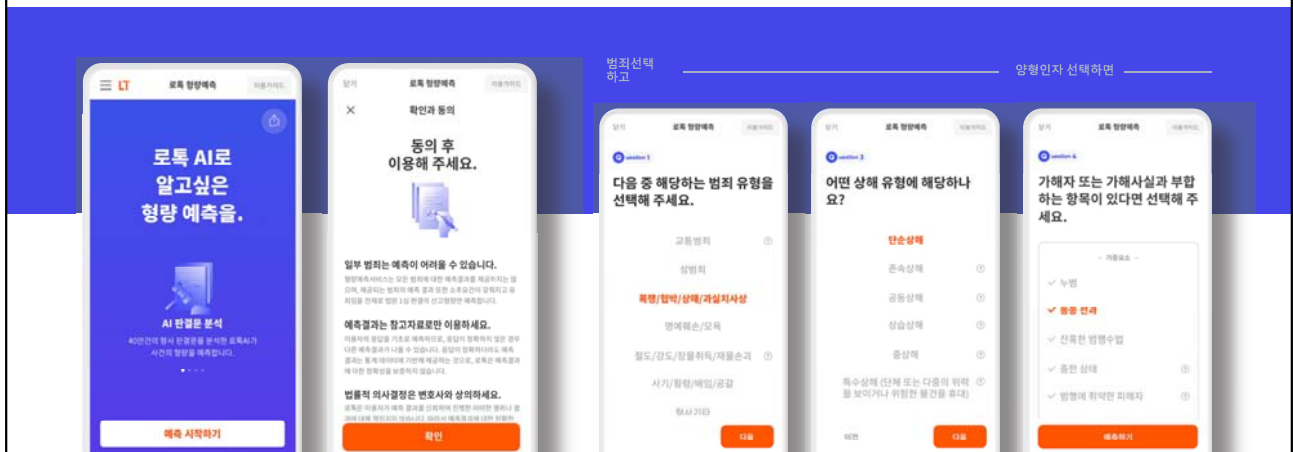


*출처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회 설문조사(1,025명), 2022년 4월
**출처 : 로톡 유료상담 대상 설문조사(2,660명), 2022년 10월

4-2 한국 리걸테크와 규제

형량예측서비스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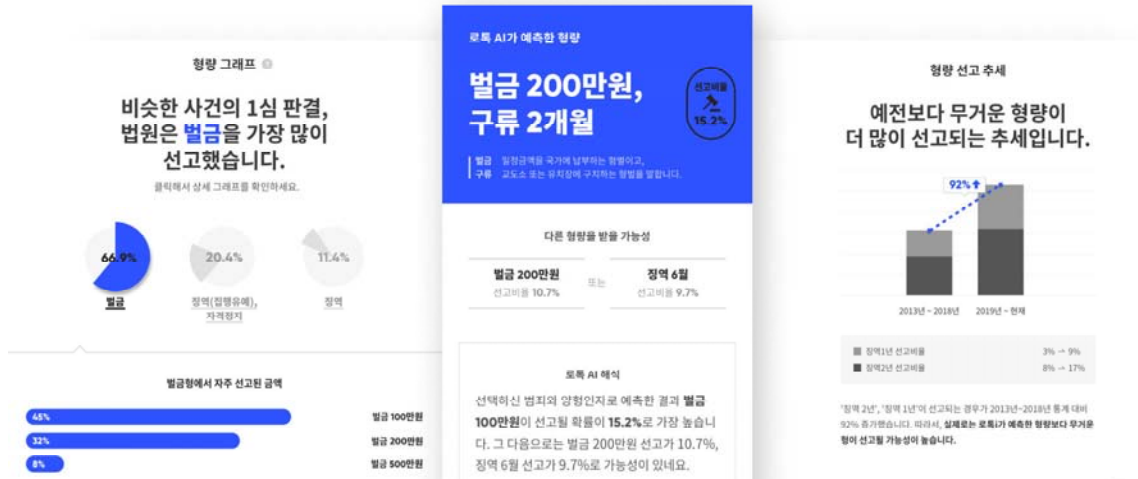
- 국내 최초로 약 40여만건의 형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하여 형량통계데이터 구축
- 연간 150만건의 형사사건 발생. 가해자, 피해자, 변호사의 합리적인 법률적 의사결정 지원
- 2020.11. 서비스 출시, 2021.2. 변호사버전 출시
- Disclaimer 동의 후 5개 내외의 질문으로 범죄 및 양형인자 특정



4-2 한국 리걸테크 산업의 과제

■ 형량예측서비스 사례

- 형량예측(최빈값), 선고추세, 형량그래프(형종·형량별 분포) 등 통계정보 제공
- 변호사버전에는 보다 상세한 통계와 형량별 판결문 제공



4-2 한국 리걸테크와 규제

■ 형량예측서비스 사례

- 변협의 개정광고규정에 근거한 로톡 변호사회원 징계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2021.9. 서비스 종료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 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변호사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

➔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그동안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및 변호사 회원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변협이 광고규정 제정을 통해 '형량 예측' 서비스 운영에 대한 변호사 협회 금지 및 징계를 강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로톡 형량예측'을 2021년 9월 27일(월)부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이용료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었으나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공적으로 인해 사법계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형량예측서비스를 이용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비스는 종료하지만, 지금까지의 선별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은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며, 더 나은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로톡 형량예측의 10개월간의 성과

누적 이용료	누적 이용료	누적 이용료
162,820건	49만 건	4.6점

5-1 한국 리걸테크 산업의 전망과 과제

■ ChatGPT 이후 법률분야에서도 AI 도입 경쟁 치열 전망

- ChatGPT 등 AI의 급속한 발전은 법률산업에도 크고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발전된 AI 적용을 통한 법률 업무의 자동화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 비용 절감 등으로 법률시장의 주체들인 로펌과 변호사, 법률소비자, 리걸테크 업체 모두에 큰 영향
- AI를 얼마나 잘 레버리지 하느냐가 국가간 경쟁을 포함해 모든 주체들간 경쟁에서 중요할 것으로 전망

■ 리걸테크에 대한 규제 및 그림자 규제 해소

- 대한변협의 그림자규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절한 지휘감독권 행사 및 광고 및 리걸테크 서비스 규율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가능하도록 법제도 정비 필요

■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입법 필요

- 해외 주요국에서는 로톡 같은 법률플랫폼 뿐만 아니라 **법률문서 자동작성, 계약서 자동검토, 소송결과예측, 온라인 분쟁해결**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가 활발히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편익을 제고하고 있음
- 예컨대, 법률문서 자동작성(Document Automation) 분야는 글로벌 리걸테크에서 큰 마켓셰어를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나, 한국에서는 변호사법 해석상 이러한 서비스가 허용되는 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변협이 이에 대해 형사고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 이용자들이 고소장, 유언장, 계약서 등 간단한 법률문서에 대해서도 자동작성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미국 'LegalZoom' 2021.7. 나스닥 상장, 일본 'LegalForce' 2022.6. 1,300억원 규모 투자유치
- **현행 변호사법 규정에 대한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해석** 나아가 **입법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함

감사합니다.

제 1 주제

Legal Tech and Legal Education in Germany

Christoph Busch
(Osnabrück University)



Legal Tech & Legal Education

Perspectives from Germany

Prof. Dr. Christoph Busch, Maître en Droit
Director, European Legal Studies Institute
University of Osnabrück
Affiliated Fellow, Information Society Project
Yale Law School

Korea University
June 2, 2023

Agenda

- What is Legal Tech?
- How does Legal Tech change the legal profession?
- How can legal education react to this trend?
- Some practical examples from Germany

Agenda

- What is Legal Tech?
- How does Legal Tech change the legal profession?
- How can legal education react to this trend?
- Some practical examples from Germany

What is Legal Tech?



What is Legal Te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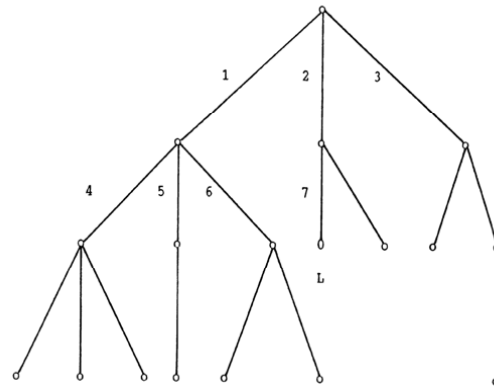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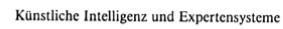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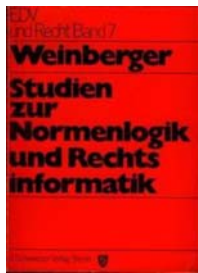


Abb. 97. Breitensuche

1970s: Legal Informatics – Legal Tech avant la lettre...

What is Legal Tech?

Legal Tech 1.0

Technical support of legal professionals regarding office organization, legal research and communication

- Office management software for lawyers (e.g. RA Micro)
- Legal databases and research tools (e.g. Juris, Beck-Online)



What is Legal Tech?

Legal Tech 2.0

Automation of legal services and standardized legal processes

- Legal tech solutions for consumers (e.g. Wenigermiete.de, Flightright, RightNow, Smartlaw)
- Legal process automation for law firms (e.g. Bryter, Kira, Smartlaw)

smartlaw

RightNow

wenigermiete.de
SETZT MIETTERECHTE DURCH!

Flightright

BRYTER
Leader in Decision Automation

kira
MACHINE LEARNING
CONTRACT ANALYSIS

What is Legal Tech?

Legal Tech 3.0

Full replacement of legal services by automated systems?

- Robot Lawyers
- Robot Judges

Would you let a robot lawyer defend you?

© 15 August 2021



GETTY IMAGES

AI is increasingly being used by the legal industry

BBC.com

Agenda

- What is Legal Tech?
- How does Legal Tech change the legal profession?
- How can legal education react to this trend?
- Some practical examples from Germany

How does Legal Tech change the legal profession?

New professional roles at the intersection of law and technology

- Legal technologists
- Legal data analysts
- Legal process managers
- Legal designers
- Legal engineers
- Legal prompt engineers
- ...

Legal Prompting: Teaching a Language Model to Think Like a Lawyer

Fangyi Yu*
Thomson Reuters Labs
19 Duncan Street
Toronto, ON M5H 3G6
Canada
fangyi.yu@tr.com

Lee Quartey
Thomson Reuters Labs
3 Times Square
New York, NY 10036
United States
lee.quartey@tr.com

Frank Schilder
Thomson Reuters Labs
610 Opperman Drive
Eagan, MN 55123
United States
frank.schilder@tr.com

Abstract

Large language models that are capable of zero or few-shot prompting approaches have given rise to the new research area of prompt engineering. Recent advances showed that for example Chain-of-Thought (CoT) prompts can improve arithmetic or common sense tasks significantly. We explore how such approaches fare with legal reasoning tasks and take the COLIEE entailment task based on the Japanese Bar exam for testing zero-shot/few-shot and fine-tuning approaches. Our findings show that while CoT prompting and fine-tuning with explanations approaches show improvements, the best results are produced by prompts that are derived from specific legal reasoning techniques such as IRAC (Issue, Rule, Application, Conclusion). Based on our experiments we improve the 2021 best result from 0.7037 accuracy to 0.8148 accuracy and beat the 2022 best system of 0.6789 accuracy with an accuracy of 0.7431.

attorneys are not only able to achieve these tasks with ease, but they are also able to effectively *explain* the basis for their work. More often than not, a simple binary response to a given legal question is far from acceptable without the appropriate rationale to conclude it, perhaps accompanied by a chain of references to applicable statutes or a legal reasoning technique such as *Issue, Rule, Application, Conclusion* (Burton, 2017).

Application of reason-based prompting mechanisms with large language models is becoming an increasingly prevalent focus area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research. Models like OpenAI's GPT-3 achieve satisfactory results – 81% accuracy with a zero-shot approach and 82.8% accuracy with a few-shot approach – on commonsense reasoning tasks drawn from the PhysicalQA dataset (Brown et al., 2020), but, as we observe, struggle significantly with more specialized domain data. Further research builds on these basic queries by imple-

<https://arxiv.org/pdf/2212.01326.pdf>

How does Legal Tech change the legal profession?

The T-shaped law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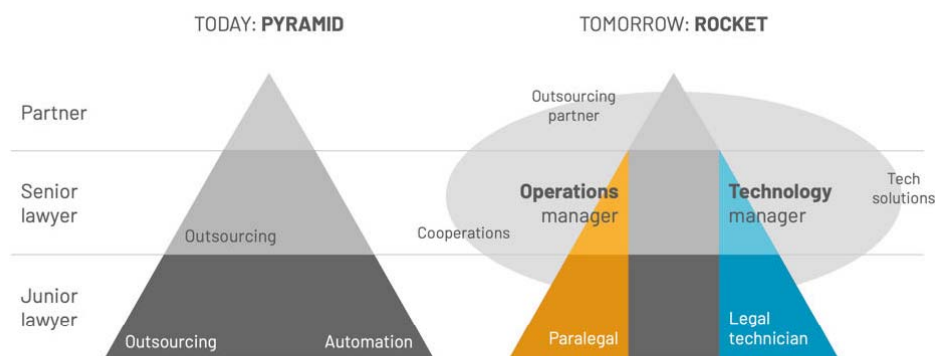


- Underlying idea: "T-Shaped Lawyer"
- Tomorrow's legal professionals not only require **deep substantive legal expertise**, but also knowledge of neighboring disciplines in order to be prepared for the challenges of a changing market.
- **Business Tools & Acumen**: Foundational economic knowledge as a core part of the curriculum
- **Technology & Data Analytics**: Tech certificate, Machine Learning in Law, Coding for Lawyers
- **Process & Project Management**: Legal Operations

Source: R. Amani Smathers, T-Shaped Lawyer, buceri.us/t-shaped-lawyer

How does Legal Tech change the legal profession?

Organizational structure of law firms



Source: BCG/Bucerus buceri.us/legaltechstudy2016

Agenda

- What is Legal Tech?
- How does Legal Tech change the legal profession?
- **How can legal education react to this trend?**
- Some practical examples from Germany

How can legal education react to this trend?

German legal education is focused on training judges and lawyers

§ 4 Abs. 1 Deutsches Richtergesetz

Die **Befähigung zum Richteramt** erwirbt, wer ein rechtswissenschaftliches Studium an einer **Universität** mit der ersten Prüfung und einen anschließenden **Vorbereitungsdienst** mit der zweiten Staatsprüfung abschließt; die erste Prüfung besteht aus einer universitären Schwerpunktbereichsprüfung und einer staatlichen Pflichtfachprüfung.

§ 4(1) German Judiciary Act

Qualification to hold judicial office is acquired by anyone who concludes their legal studies at a **university** by taking the first state examination and completes a subsequent period of **preparatory training**; the first state examination comprises a university examination covering areas of specialisation and a state examination covering compulsory subjects.

How can legal education react to this trend?

Digital legal literacy has only recently been added to the curriculum

§ 7 Abs. 2 Juristenausbildungsgesetz Nordrhein-Westfalen

„Die Inhalte des Studiums berücksichtigen die rechtsprechende, verwaltende und rechtsberatende Praxis einschließlich der hierfür erforderlichen **Schlüsselqualifikationen** wie **digitale Kompetenz**, Verhandlungsmanagement, Gesprächsführung, Rhetorik, Streitschlichtung, Mediation, Vernehmungslehre und Kommunikationsfähigkeit.“

§ 7(2) Act on Legal Education North Rhine-Westphalia

„The content of the studies takes into account the judicial, administrative and legal counseling practice, including the **key skills** required for this, such as **digital literacy**, negotiation management, interviewing, rhetoric, dispute resolution, mediation, interrogation theory and communication skills.“

Amendment of the Act on Legal Education of 17 November 2021

How can legal education react to this trend?

Digital legal literacy

Future lawyers...

- do not necessarily have to be able to write program code.
- should be able to communicate with software engineers in interdisciplinary teams.

No-code /
Low-code
development
platforms



How can legal education react to this trend?

Digital legal literacy

Future lawyers...

- should be aware of the potential and the limitations of digital tools.
- should have a sound knowledge of legal methodology. Legal foundations must not be neglected.

Here's What Happens When Your Lawyer Uses ChatGPT

A lawyer representing a man who sued an airline reli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o help prepare a court filing. It did not go well.

New York Times, May 27, 2023

ON TECH: A.I. NEWSLETTER

What Makes A.I. Chatbots Go Wrong?

The curious case of the hallucinating software.

New York Times, March 29, 2023

How can legal education react to this trend?

Digital examinations

Digital examinations have been introduced in several States

2nd State Exam

- 2019 Saxony-Anhalt
- 2021 Rhineland-Palatinate, Saxony
- 2022 Bremen, Hesse
- 2023 Berlin, Thuringia, Baden-Wurttemberg
- 2024 Bavaria

1st State Exam

- 2023 Rhineland-Palatinate
- 2024 North Rhine-Westphalia

EINSPRUCH EXKLUSIV Das Digitalexamen kommt – unterschiedlich schnell

VON LUCA ALIZA KLEEBERG · AKTUALISIERT AM 16.01.2023 · 17:21



Das Deutsche Richtergesetz ermöglicht es den Bundesländern, ihren Jurastudenten und Referendaren ein elektronisch geschriebenes Examen anzubieten. Die Länder machen davon allerdings teilweise recht zögerlich Gebrauch – eine aktuelle Analyse.

FAZ Einspruch, January 16, 2023

Agenda

- What is Legal Tech?
- How does Legal Tech change the legal profession?
- How can legal education react to this trend?
- **Some practical examples from Germany**

Some practical examples from Germany

Until recently, Legal Tech was mostly absent from the curriculum of German law schools...

...but this has changed quickly.



<https://rsw.beck.de/aktuell/daily/meldung/detail/studie-kaum-legal-tech-in-studium-und-referendariat>

Some practical examples from Germany



A growing number of student initiatives shows that law students are interested in Legal Tech

Some practical examples from Germany



Universität Osnabrück

Vortragsveranstaltung und Podiumsdiskussion
Legal Tech – Zukunft des Rechtsmarktes?

14:00 Uhr Begrüßung und Einführung
 Prof. Dr. Hans-Joachim Lauth, Dekan der Rechtswissenschaften
 Alexander Andrich und Florian Grunke, Sprecher des Osnabrücker Legal Tech Forum

14:10 Uhr Legal Tech und die Veränderung des Rechtsmarktes
 Michael Wehling, Direktor des Business Center am Osnabrücker Legal Tech Forum (GLTF)

14:30 Uhr Softwarelösungen für die Rechtsbranche
 Dirk Andrich, Geschäftsführer der LEGAL-ONE GmbH

15:00 Uhr Kollaboration und Interdisziplinäre
 Die Bedeutung von Digitalisierung und KI für die Juristenbildung
 Tanya Tsam, Gründer von ILL expert

15:40 Uhr Legal Automation – Automatisierte Rechtsberatung?
 Prof. Dr. Christoph Busch, Maître en Droit,
 Sprecher der Plattform Virtuelles Gesetzgebungs-Innovation – Regulierung

17:00 Uhr Ausblick
 Alexander Andrich und Florian Grunke

17:30 Uhr Podiumsdiskussion: Legal Tech in der Juristenbildung
 Moderation: Prof. Dr. Hans-Joachim Lauth
 Teilnehmer: Tanya Tsam, Christoph Busch, Alexander Andrich, Florian Grunke

Donnerstag, 09. Mai 2019 - 14 Uhr
 European Legal Studies Institute (ELSI)
 Süsterstraße 28, 49074 Osnabrück - Raum 44/E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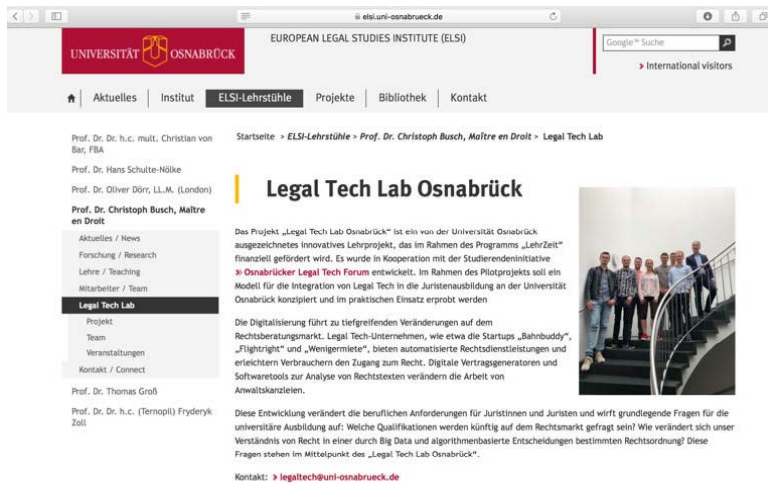
Veranstaltet:
 Osnabrücker Legal Tech Forum
 E-Mail: ansprechpartner@osnabruecker-legal-tech-forum.de
 Instagram: @osnabruecker_legal_tech_forum

Osnabrücker Legal Tech Forum
 Fachbereich Rechtswissenschaften
www.jura.uni-osnabrueck.de



Osnabrück Legal Tech Conference 2019

Some practical examples from Germany



Legal Tech Lab Osnabrück

Pilot project
2019-2021

Some practical examples from Germany




Flightright

BRYTER
Leader in Decision Automation

 RightNow

Guest lectures by
Legal Tech
Practitioners



Some practical examples from Germany

Digital Law – Recht in der digitalen Gesellschaft (since 2021)

New area of specialisation for law students („Schwerpunktbereich“) at Osnabrück University (2 semesters)

Mandatory courses

- Digital Contracts
- Legal Tech
- European & International Media Law
- Algorithmic Liability

Elective courses

- Cybercrime
- Data Protection
- Online Dispute Resolution
- Platform Regulation
- Blockchain & Smart Contracts
- Online Games Law
- AI & Law
- ...



Some practical examples from Germany

Study program „Computer Science and Digitalization for Lawyers“

(since 2019)

Mandatory courses

-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 Business Information Systems
- Artificial Intelligence
- Multimedia Systems
- Cybersecurity

Elective courses

- Data Protection
- Digital Media Law
- Introduction to Law and Technology

Some practical examples from Germany

Examples of Legal Technology Programs at Bucerius Law School



Bucerius Summer Program
Legal Technology and Operations



Legal Tech & Legal Education

Perspectives from Germany

Prof. Dr. Christoph Busch, Maître en Droit
Director, European Legal Studies Institute
University of Osnabrück
Affiliated Fellow, Information Society Project
Yale Law School

Korea University
June 2, 2023



리걸테크 및 법학교육

독일의 관점

크리스토프 부쉬 교수, 법학 박사

유럽법률연구연구소 소장

오스나브뤼크 대학교

정보사회프로젝트 소속연구원

예일 로스쿨

고려대학교

2023년 6월 2일

의제(안건)

- 리걸 테크란 무엇인가?
- 리걸 테크는 법조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법학 교육은 이러한 추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 독일의 실제 사례

의제(안건)

- 리걸 테크란 무엇인가?
- 리걸 테크는 법조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법학 교육은 이러한 추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 독일의 실제 사례

리걸 테크란 무엇인가?



리걸 테크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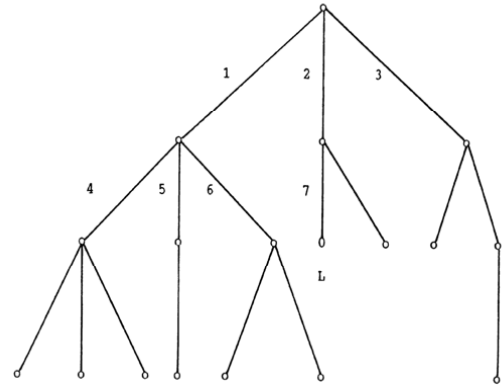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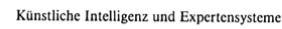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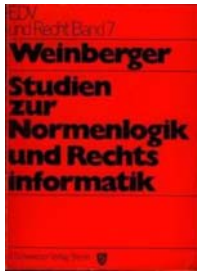


Abb. 97. Breitensuche

1970s: Legal Informatics – Legal Tech avant la lettre...

리걸 테크란 무엇인가?

리걸 테크 1.0

법관 조직, 법률 연구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
전문가의 기술 지원

- 변호사를 위한 사무 관리 소프트웨어
(예: RA Micro)
- 법률 데이터베이스 및 연구 도구
(예: Juris, Beck-Online)



리걸 테크란 무엇인가?

리걸 테크 2.0

법률 서비스 자동화 및 표준화된 법률 프로세스

- 소비자를 위한 법률 기술 솔루션
(예: Wenigermiete.de, Flightright, RightNow, Smartlaw)
- 법률 데이터베이스 및 연구 도구
(예: Bryter, Kira, Smartlaw)

smartlaw

RightNow

wenigermiete.de
SETZT MIETTERECHTE DURCH!

Flightright

BRYTER
Leader in Decision Automation

kira
MACHINE LEARNING
CONTRACT ANALYSIS

리걸 테크란 무엇인가?

리걸 테크 3.0

법률 서비스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 로봇 변호사
- 로봇 판사

Would you let a robot lawyer defend you?

© 15 August 2021



GETTY IMAGES

AI is increasingly being used by the legal industry

BBC.com

의제(안건)

- 리걸 테크란 무엇인가?
- 리걸 테크는 법조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법학 교육은 이러한 추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 독일의 실제 사례

리걸 테크는 법조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법률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전문직의 역할

- 법률 기술자
- 법률 데이터 분석가
- 법률 프로세스 관리자
- 법률 디자이너
- 법률 엔지니어
- 법률 프롬프트 엔지니어
- ...

Legal Prompting: Teaching a Language Model to Think Like a Lawyer

Fangyi Yu*
Thomson Reuters Labs
19 Duncan Street
Toronto, ON M5H 3G6
Canada
fangyi.yu@tr.com

Lee Quartey
Thomson Reuters Labs
3 Times Square
New York, NY 10036
United States
lee.quartey@tr.com

Frank Schilder
Thomson Reuters Labs
610 Opperman Drive
Eagan, MN 55123
United States
frank.schilder@tr.com

Abstract

Large language models that are capable of zero or few-shot prompting approaches have given rise to the new research area of prompt engineering. Recent advances showed that for example Chain-of-Thought (CoT) prompts can improve arithmetic or common sense tasks significantly. We explore how such approaches fare with legal reasoning tasks and take the COLIEE entailment task based on the Japanese Bar exam for testing zero-shot/few-shot and fine-tuning approaches. Our findings show that while CoT prompting and fine-tuning with explanations approaches show improvements, the best results are produced by prompts that are derived from specific legal reasoning techniques such as IRAC (Issue, Rule, Application, Conclusion). Based on our experiments we improve the 2021 best result from 0.7037 accuracy to 0.8148 accuracy and beat the 2022 best system of 0.6789 accuracy with an accuracy of 0.7431.

attorneys are not only able to achieve these tasks with ease, but they are also able to effectively *explain* the basis for their work. More often than not, a simple binary response to a given legal question is far from acceptable without the appropriate rationale to conclude it, perhaps accompanied by a chain of references to applicable statutes or a legal reasoning technique such as *Issue, Rule, Application, Conclusion* (Burton, 2017).

Application of reason-based prompting mechanisms with large language models is becoming an increasingly prevalent focus area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research. Models like OpenAI's GPT-3 achieve satisfactory results – 81% accuracy with a zero-shot approach and 82.8% accuracy with a few-shot approach – on commonsense reasoning tasks drawn from the PhysicalQA dataset (Brown et al., 2020), but, as we observe, struggle significantly with more specialized domain data. Further research builds on these basic queries by imple-

<https://arxiv.org/pdf/2212.01326.pdf>

리걸 테크는 법조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T자형 변호사



- 기본 아이디어: “T자형 변호사”
- 미래의 법률 전문가는 변화하는 시장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심도있는 **실체적 법률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인접 분야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 **비즈니스 도구 및 통찰력**: 커리큘럼의 핵심 부분으로서의 기초적인 경제 지식
- **기술 및 데이터 분석**: 기술 자격증, 법률 분야의 머신러닝, 변호사를 위한 코딩
- **프로세스 및 프로젝트 관리**: 법률 운영

Source: R. Amani Smathers, T-Shaped Lawyer, buceri.us/t-shaped-lawyer

리걸 테크는 법조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로펌의 조직 구조



Source: BCG/Bucerus buceri.us/legaltechstudy2016

의제(안건)

- 리걸 테크란 무엇인가?
- 리걸 테크는 법조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법학 교육은 이러한 추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 독일의 실제 사례

법학 교육은 이러한 추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판사 및 변호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독일의 법학 교육

§ 4(1) 독일의 법원조직법

- 법관 자격은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마친 후 1차 국가시험을 치르고 이후 일정 기간의 예비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으며, 1차 국가시험은 전문분야를 범위로 한 대학시험 및 필수과목을 범위로 한 국가시험으로 구성된다.

법학 교육은 이러한 추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최근에서야 커리큘럼에 추가된 디지털 법학 교육

§ 7(2) 법학교육에 관한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학습 내용은 디지털 리터러시, 협상 관리, 인터뷰, 수사학, 분쟁 해결, 중재, 심문 이론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같이 이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및 법률 상담 실무에 대한 내용을 고려한다.”

2021년 11월 17일
법학 교육에 관한 법률 개정

법학 교육은 이러한 추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디지털 법학 리터러시

미래의 변호사는 ...

- 반드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여러 분야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노코드/로우코드
개발 플랫폼



법학 교육은 이러한 추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디지털 법학 리터러시

미래의 변호사는 ...

- 디지털 도구의 잠재력 및 한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 법률적 방법론에 대한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법적 토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Here's What Happens When Your Lawyer Uses ChatGPT

A lawyer representing a man who sued an airline reli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o help prepare a court filing. It did not go well.

New York Times, May 27, 2023

ON TECH: A.I. NEWSLETTER

What Makes A.I. Chatbots Go Wrong?

The curious case of the hallucinating software.

New York Times, March 29, 2023

법학 교육은 이러한 추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디지털 시험

여러 주에서 디지털 시험이 도입

2차 주 시험

2019 작센-안할트

2021 라인란트팔츠, 작센

2022 브레멘, 헤센

2023 베를린, 튀링겐, 바덴뷔르템베르크

2024 바이에른

1차 주 시험

2023 라인란트-팔츠

2024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EINSPRUCH EXKLUSIV

Das Digitalexamen kommt – unterschiedlich schnell

VON LUCA ALIZA KLEEBERG · AKTUALISIERT AM 16.01.2023 · 17:21



Das Deutsche Richtergesetz ermöglicht es den Bundesländern, ihren Jurastudenten und Referendaren ein elektronisch geschriebenes Examen anzubieten. Die Länder machen davon allerdings teilweise recht zögerlich Gebrauch – eine aktuelle Analyse.

FAZ Einspruch, January 16, 2023

의제(안건)

- 리걸 테크란 무엇인가?
- 리걸 테크는 법조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법학 교육은 이러한 추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 독일의 실제 사례

독일의 실제 사례

최근까지 독일의 로스쿨 커리큘럼에서
리걸 테크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상황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https://rsw.beck.de/aktuell/daily/meldung/detail/studie-kaum-legal-tech-in-studium-und-referendariat>

Some practical examples from Germany



학생 이니셔티브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법대생들이 리걸 테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일의 실제 사례



UNIVERSITÄT OSNABRÜCK

Vortragsveranstaltung und Podiumsdiskussion
Legal Tech – Zukunft des Rechtsmarktes?

14:00 Uhr Begrüßung und Einführung
 Prof. Dr. Hans-Joachim Lauth, Leiter des Fachbereichs Rechtswissenschaften
 Alexander Andrich und Florian Grunke, Sprecher des Osnabrücker Legal Tech Forum

14:10 Uhr Legal Tech und die Veränderung des Rechtsmarktes
 Michael Neuhoff, Direktor des Business Center am Osnabrücker Legal Tech Forum (GLTF)

14:30 Uhr Schlussfolgerungen für die Rechtsbranche
 Dirk Andrich, Geschäftsführer der GLTF AG

15:30 Uhr Kaffeepause und Interim

16:00 Uhr Die Bedeutung von Digitalisierung und KI für die Juristenbildung
 Tanya Tsam, Gründer von ILL expert

16:40 Uhr Legal Automation – Automatisierte Rechtsberatung?
 Prof. Dr. Christoph Busch, Maître en Droit, Sprecher der Plattform Virtuelles Gesetzgebungs-Innovation-Regulierung

17:20 Uhr Ausblick
 Alexander Andrich und Florian Grunke

17:30 Uhr Podiumsdiskussion: Legal Tech in der Juristenbildung
 Moderation: Prof. Dr. Hans-Joachim Lauth
 Teilnehmer: Tanya Tsam, Christoph Busch, Alexander Andrich, Florian Grunke

Donnerstag, 09. Mai 2019 - 14 Uhr
 European Legal Studies Institute (ELSI)
 Süsterstraße 28, 49074 Osnabrück - Raum 44/E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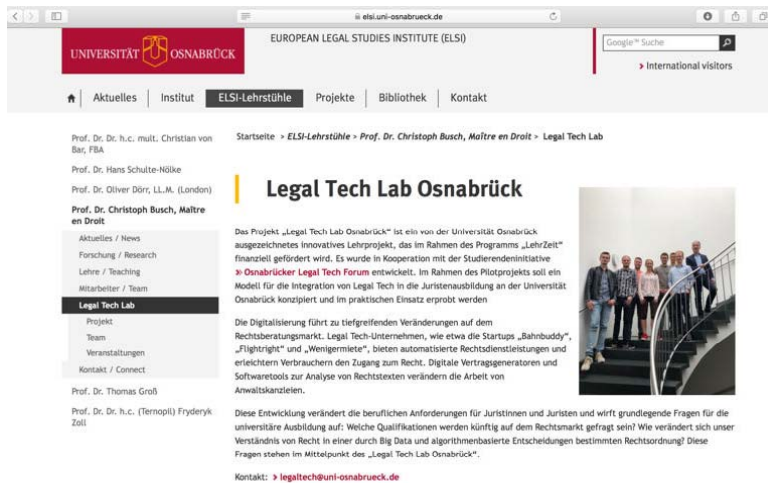
Veranstaltet:
 Osnabrücker Legal Tech Forum
 E-Mail: osnabrueckerforum.de
 Instagram: [osnabrueckerforum](https://www.instagram.com/osnabrueckerforum)

Osnabrücker Legal Tech Forum
 Fachbereich Rechtswissenschaften
www.jura.uni-osnabrueck.de



오스나브뤼크 리걸 테크 컨퍼런스 2019

독일의 실제 사례



리걸 테크 랩 오스나브뤼크
파일럿 프로젝트
2019-2021

독일의 실제 사례



✓ x ✓
Flightright

BRYTER
Leader in Decision Automation

RightNow

리걸 테크 실무자
초빙 강연

독일의 실제 사례



디지털 법률 - 디지털 사회의 법률 (2021년 이후)

오스나브뤼크 대학교의 법대생을 위한 새로운 전문 분야
("슈베르폰트 베라이히") (2학기)

필수 과목

- 디지털계약
- 법률 기술
- 유럽 및 국제 미디어법
- 알고리즘 책임

선택 과목

- 사이버 범죄
- 데이터 보호
- 온라인 분쟁 해결
- 플랫폼 규제
- 블록체인 및 스마트계약
- 온라인 게임 법률
- 인공지능과 법
- ...

독일의 실제 사례



"변호사를 위한 컴퓨터 공학 및 디지털화" 학습 프로그램 (2019년부터)

필수 과목

- 컴퓨터 과학 입문
- 비즈니스 정보 시스템
- 인공지능
- 멀티미디어 시스템
- 사이버 보안

선택 과목

- 데이터 보호
- 디지털 미디어 법률
- 법과 기술 입문

독일의 실제 사례



부체리우스 로스쿨의 법률 기술 프로그램 사례

Legal Tech Essentials 2022

In a curated, intense, remote, and free lecture series, discover the future of the legal market. Hear academic lectures and personal stories, ask questions, and gain insight into current advances in Legal Technology, Legal Operations, and Legal Innovation. Now coming to even more timezones.

2022-11-10 through 2022-12-08



Bucerius Summer Program
Legal Technology and Operations



리걸테크 및 법학교육 독일의 관점

크리스토프 부쉬 교수, 법학 박사

유럽법률연구연구소 소장

오스나브뤼크 대학교

정보사회프로젝트 소속연구원

예일 로스쿨

고려대학교

2023년 6월 2일

제 2 주제

변호사시험의 과거, 현재, 미래

홍영기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의 과거, 현재, 미래 -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며 -

홍 영 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퍼센트 수준에 머문 지 오래되었다. 극소수 우수한 로스쿨 학생들을 제외하고,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시험에 낙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변호사시험은 과목을 불문하고 방대한 판례의 단순한 암기여부를 묻는 것이므로, 법전원이 아무리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수들이 수준 높은 법지식과 실무능력을 가르치고 싶어도 학생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는 까닭이다. 학생들은 다가올 변호사시험에 대비해주지 못하는 법전원과 교수들을 원망하고, 교수들도 외부강사와 판례요약집에 의존하는 수험법학을 하찮게 여기니, 지금 로스쿨 안에서 불행하지 않은 주체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불행은 로스쿨 안에 머물지 않고 곧이어 법률가의 실력저하와 우리나라 법문화의 퇴보로 이어진다.

우리 사이에서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하려 시도하기도 전, 지금 외부로부터 인공지능(A.I.)의 위력이 법조계에 빠르게 침투해오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상황은 불과 한 달 전과 지금이 다르다. 그 개발자들조차 스스로 두려워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팽창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양적, 질적 수준은 미래에 그것이 법조인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막연한 수준에 머물게 두지 않는다. 변호사들은 이미 수준 높은 리걸테크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적인 판례, 문헌조사 수준을 넘어선 제안을 얻을 수 있고, 기존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던 의뢰인(기업)들도 동일한 이와 서비스를 무리 없이 활용하고 있다. 기존 법무질서를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이 흐름을 막아서려 하더라도¹⁾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고, 적어도 국경도 없고 사람의 번역도 필요 없는 온라인에서의 외국 리걸테크 사업의 진격까지 막아낼 도리는 없을 것이다.

모든 문제를 일순간에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시적인 변화는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때다. 전국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둔 로스쿨에 여전히 판례암기나 강제하는 지금의 변호사시험은 더 늦기 전에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시험준비가 곧 법학교육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개편은 법학교육 개선의 처음이자 끝이다.

1) 'AI발 법조계 지각변동 변협 제동 들어가나'(일요신문 2023. 5. 10). 독일의 예는 Hellwig/Ewer, Keine Angst vor Legal Tech, 1783면.

I. 상황

1. 로스쿨의 현재

상황분석은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지금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또는 ‘로스쿨’로도 씀)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이라면 교수, 학생을 불문하고 법학교육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법과목을 대강 분류하여 상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수험법학에 갇힌 고시학원으로 전락하였다.”²⁾ 과거 소위 ‘신림동법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 보도된 신문기사이다. 로스쿨에서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소송법 등 ‘변호사시험출제과목’은 철저히 문제풀이 위주로 접근하면서, 그에 필요한 판례와 이론만 다루고 있다. 만약 교수가 ‘판례를 읽을 때에는 비판적으로 숙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그 판례 논리가 어디에 가 닿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판례를 비평할 수 있는 이론과 논증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한다면 그 수업이 바로 시험적합성 없는 강의의 전형이다.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변호사시험 합격에 직접 도움이 되는 강의를 들어야 하니 외워야 할 판례를 정리해주는 외부 학원강사의 수업을 더 선호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있는 3학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기초적인 이론을 배우기 시작하는 1학년은 물론, 로스쿨 합격이 결정된 이후에 연습으로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들조차 변호사시험준비용 교재를 읽으며 법학을 시작하고 있다.

변호사시험과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전문법과목’이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미래지향적 또는 전문적인 법교육을 목표로 하고 나선 로스쿨에서 막상 그와 같은 법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각종 국제관계에 대한 법, IT에 관한 법, 금융이나 보험, 해상, 부동산, 환경, 경찰 등 현재와 미래사회에 쓰임이 크다는 4차 산업 주도형 과목을 비롯하여 특수한 영역의 각종 법들이 학제상 목록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개설이 되는 강의는 극히 일부에 그친다. 더욱이 이론의 추상성이 높은 기초적인 법과목은 이미 고사되었다. 과거 법과대학 시절에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 여기던 법철학과 법학방법론 수업마저 폐강되거나 아예 개설조차 되지 않는 로스쿨이 대부분이다. 그 결과 학생들은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의미와 양자의 대립 등, 성문법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실제로 실무에 나아가 직접닥치게 될 관건에 대해서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한 채 로스쿨을 졸업한다.³⁾

2) 위기의 로스쿨 ‘암기 전문가’ 양성소로 전락, 아주경제, 2022. 8. 9.

3) 3학년 전 과정에서 필수과목 이외에는 변호사시험준비에 필요한 연습과목, 기록연습과목 등을 수강한다. 이외에 재판실무과목, 임상실무, 로클릭이나 검찰준비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나면 졸업요건인 학점이 많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 그러니 학점이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스스로 변호사시험준비를 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법에 관심이 있어도 수강할 필요가 없다.

실무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일선에서 뛰어난 성과를 축적해온 교수가 실무경험을 전달하고자 하는 좋은 수업들을 개설하더라도 교과과정과 변호사시험에 집중하는 학생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각 법전원 측에서는 이제 상황에 맞게, 실무가출신 교수들에게 현장감 있는 실무교육 대신 기록형시험이나 연습문제풀이 등 변호사시험준비에 곧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외부의 출강교수들을 통해서 로클릭이나 검찰선발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무과목의 수요가 유지될 뿐이다.

2. 현행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은 과거 사법시험 때와 똑같이 법조문과 수많은 판례를 모두 암기하는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출제되고 있다. 지금 변호사시험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는 조건을 통해 판례의 판결요지만을 암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응시자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만 개가 넘는 판례를 외워야 한다고 한다.⁴⁾ 주어진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시간은 3년도 채 되지 않기에 학생들의 관심은 ‘판결요지’에 쏠릴 수밖에 없고, 이를 잘 정리해주지 않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보다는 간결하게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원강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를 통해서 수험생들은 법학의 기초로부터 응용실무까지 가닿는 맥락에 근접하지 못하고 가장 끝에 도출된 결론만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중요한 판례는 암기하고 있는 것이 법학을 익히는 중요한 방법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시험에서는 비중 있는 판례만 묻지 않는다. 이론적 중요성이 전혀 없는 말단실무적·사실관계 확인차원에서만 의미 있는 판례도 자주 출제되고 있다. 최신 판례뿐만 아니라 먼 과거의 판례도 출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지나치게 오래된 것이어서 지금 해당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거나 이 시대에는 법원이 충분히 다른 이론구성을 할 가능성이 있는 판례, 이미 그 취지가 극복된 것으로 보이는 판례까지 무분별하게 출제되고 있다.⁵⁾ 간혹 단순 법조문을 암기해

들어야 하는 많은 과목은 파견되거나 출강하는 실무가들이 맡고 있기에 로스쿨 학생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의 대다수 교수들과는 일면식도 갖지 않은 채로 졸업을 맞게 된다.

4) 수험서에 언급된 학습대상 판례의 숫자는 민사법, 형사법, 공법을 합하여 총 12,581개에 달한다(천경훈,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248면).

5)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선택형시험에서 사기죄와 강도상해죄의 가중·감경에 대한 매우 지엽적인 계산의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그 가운데 한 지문은 대법원 1964. 10. 28. 선고 64도454 판결을 모범으로 하고 있다.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의 민법 선택형 문제에서 ‘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소가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의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해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소가 산정이 기준이 된다’는 판례(대판 1976. 9. 28. 75다2064)에 근거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의를 제기한 수험생들은 지금의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3조에 의하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경우는 피담보채권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이 되어야 하고, 또 말소등기의 이유가 설정계약 등의 해지나 해지로 인한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이지만,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경우는 채권최고액의 2분의 1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1976년 판결 당시에는 인지규칙이 제정 전이었지만 현재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1991년 제정)이 있고 이에 따르면 지문 ③도 정답이 된다는 내용의 반박이 있었다(법률신문 2016년 2월 19일자).

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헌법의 선택형시험에서는 한국헌정사와 국회법, 국적법 등의 부속법령 내 개별내용이 범위에 포함되며, 상법의 경우 상법총칙과 상행위의 문제들은 상법 제1편과 제2편의 법조문을 그대로 활용하는 출제경향을 보인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상법전 제3편 중 해당 회사들에 관한 법조문을 역시 일체의 변경 없이 그대로 출제된 최근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 이외에 재판실무 과목까지 더해져 학생들은 판례나 법전은 물론 매우 사소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기간’, ‘기한’, ‘액수’나 그 계산 방법까지 외워야 하는 경우도 있다.

3. 학생들의 공부

법전원에서 교수들에게 배우는 내용은 중간·기말시험준비를 위한 잠시의 과정에 불과하고 변호사시험준비의 핵심이 판례의 암기에 있다는 것을 학생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과거 ‘신림동 수험법학’에 학생들이 의존하였던 사법시험 시절보다 더 악화되었다.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졌고, 문제도 과거에 비해 더욱 단순한 판례 결론만을 묻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상 또는 이론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스스로 선별할 수 있는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한 수험생들은 엄청난 양의 판례를 평면적으로 외우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시험대비 수단이 없다. 종종 출제되는 이와 같은 지엽적인 판례와, 그와 같은 ‘불의타’를 피하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는 시험대비판례요약서를 접하는 학생들은 판례의 산더미에서 3년 내내 허덕이고 있다. 다음은 변호사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보는 교재의 일부이다.

자본성 ○	자본성 X
지방의회 의장 불산임의결	도시합동지방의회를 설립 시정에서는, 보지 소유자를 이 작성한 사업시행계획
A자자세장의B자자세장에 대한 건축협의취소	추산순회결정(의결본의,의결본 취학 불과.)
인기/고사 전 재건축조합의 권리처분계획	4대강 하수처리장
도시합동지방의회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분할신청 후 매 장한 권리처분계획	포지대장의 소유지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사업계획부적합통보 (제가물관리)	법무법원의 공판중지 작성행위
부지사전송인 (단, 이후 회계처분시 종수)	민원처리법상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는 위자의 기각결정
했규에 의한 행정행위가 권리의무에 영향신	국유 일반재산의 사용료 납입고지
국가안전권 성취를결정 및 시행조치권고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도급계약의 낙찰자결정
지적공부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도급계약의 국고귀속조치
공정위원 경고의결	요원회의의 인사발령 (·권남의 통지)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해군함포총장 명예전직수령 지급대상자 추천
사인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의요기관 명칭표시전에 전표과목 글자크기 제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군사면의 선제동원행위
포산조지연결의 열차신장에 대한 거부	한국자관공의 공매통지
지휘계엄조치 수리행위	과세법령의 국세환급결정, 또는 국세환급금결정 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국가에 원 전장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은 순간 아무런 변상금 전입없이 부당이득 한것으로, 결정에 의해 보조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 아님)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	산림청장이 산림법에 따라 국유림야를 대부 매각 할아는 행위/산정 전라하는 행위 (··사법상 행 위)
국유간도토지물 문책명고	
전속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법적 논증은 고사하고 문장 자체도 없다. 외우는 데에 도움이 되는 단어의 나열뿐이다. 이렇게 키워드만 쏙아 암기하는 것이 암기의 효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객관식시험을 신속하게 푸는 데에 유용하다고 한다. 머리를 회전시킬 필요가 없는, 법리를 쓰지 않을수록 유리한 시험을 학생들에게 치르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준비 이외에 ‘진짜 법공부’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기회를 통해서도 어떻게 바른 법학을 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급한 것은 변호사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준비에 특화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선배들의 절박한 말이 더 현실감 있게 들리기 때문이다.

4. 변호사가 된 후

수험생들은 시험에 닥쳐서 만 개에 육박하는 판례를 머릿속에 억지로 우겨넣고서 시험장에 들어간다. 그 내용을 한꺼번에 시험지에 털어놓은 다음, 시험 직후에는 그 많은 양의 판례는 머리용량의 한계에 따라 눈 녹듯 없어져 버린다. 이것으로 변호사시험은 끝나고 곧바로 법조인이 된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 십 수 년이 되어 누구나 인터넷을 손안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정보의 암기’는 이 시대에 아무런 기량이 못 된다. 키워드를 주고 관련판례를 검색하게 한다면 변호사시험을 마친 변호사보다 핸드폰을 검색할 줄 아는 중학생이 훨씬 더 우수한 결과물을 내어놓는다. 다가올 세대는 인터넷으로부터 정보를 찾는 능력 면에서 기성세대를 압도하고 있으며, 미래의 학생들은 지금 짐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와 범위에서 정보를 찾아내게 될 것이다. 외국어 이해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구글 등을 통해 전 세계의 광범위한 정보들을 순식간에 아무 무리 없이 읽어낼 수가 있다. 그렇기에 이제 머리 안에 법조문과 각종 이론, 판례의 결론과 판시이유를 많이 넣어 갖고 다니는 기존 법조인들은 각오를 해야 한다. 그것만을 무기와 자산으로 삼으려 한다면 아직 변호사시험을 치르지도 않은 로스쿨 신입생은 물론 검색에 능한 고등학생보다 앞서리라는 보장이 없다.

5. AI의 공습

바로 이 때에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부딪혀버렸다. 로스쿨 내 교육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게 된 계기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부터 비롯된다. 지금 이른바 ‘리걸테크’라 불리는 영역에서 A.I.는 법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1초 만에 10억 장의 판례 분석 리걸테크, 법률시장 판도 바꾼다.”⁶⁾ 이 기사가 나온 지 이미 5년이 되었다. 지금은 그때의 우리가 내다보지 못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A.I.의 신기술이 지금 우리가 상상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안과 판례를 순식간에 분석하여, 문제되고 있는 사안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법까지 제안하게 된 것이다. 기계장치는 법률과 판례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수 만 개의 법학서적과 논문까지도 순식간에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모든 예도 참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의 가능한 유사한 사안까지도 내다볼 역량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인간의 그것을 아주 멀찍이 따돌려버렸다. 그리고 몇 년 안에 그 정

6) 조선일보 2018.10.1.일 자.

확성이나 속도, 신뢰도는 더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플랫폼 사업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법률서비스를 확장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들이 새로운 대안을 속속 제시하고 있다. 일부 로펌들도 이를 경계하는 한편 그 소프트웨어의 힘을 빌어 기존 경력이 짧은 변호사들이 해왔던 기초적인 판례, 문헌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력을 절약하고 있다. 변호사(로펌)가 새로운 리걸테크를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야만 다가올 시대에 경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이미 확산되어 가고 있다.⁷⁾ 변호사들만이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소비자도 자신에게 닥친 사안을 놓고 단계별로 주어지는 질문에 따라 상응하는 문항을 선택해 넣는 절차를 진행하면 일정한 법적 결론을 제시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 다음 등 각종 포털에서 이런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지금의 챗GPT 정도의 인공지능도 법률문제에 대한 답을 곧잘 해내고 있기에 기존 법률서비스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일반인들도 쉽게 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변호사는 지금까지와 다른 입장에서 의뢰인들을 접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사고능력이 있는 의뢰인이라면 자신이 직접 검색을 해봐도 금세 찾을 수 있는 사례를 해결방법을 그대로 반복하길 법률가들에게 바랄 리 없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기술발달과 더불어, 그리고 일반 시민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굳이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은 A.I.가 인간과 같은 답을 생각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 기계는 단 하나의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사안을 놓고서도 어떠한 법률과 법리, 판례를 이용하면 A, 다른 법률과 판례, 이론을 사용했을 때 B... 와 같이 선택지를 제안하고 사용자에게 원하는 경로를 선택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제시된 여러 가능한 논리와 답을 알게 된다면, 그 이외에 더 좋은 법논리를 찾는 것이 극히 어려워질 직업법률가들은 어떠한 업무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6. 법무부에게

이런 상황임에도 요약된 판례를 외우도록 계속 학생들을 몰아세우고 있는 변호사시험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을 수는 없다. 판례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정답에 대한 시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론적인 논점을 출제할 수는 없어 결론이 뚜렷한 판례문장을 고스란히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그토록 출제와 채점의 부작용을 두려워하는 동안 우리 법학교육은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외로운 곳에서 스스로 파멸하고 있다.

간단한 질문만 하나 더 추가해본다.

“이럴 거였으면 우리는 왜 그토록 우수한 인재를 뽑고 있는가?”

지금 유수의 대학 많은 전공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이라면 한번 쯤은 법전원 진학을 생각해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트(LEET: 법학적성능력시험) 응

7) Hellwig/Ewer, Keine Angst vor Legal Tech, 1784면.

시자수가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⁸⁾ 로스쿨은 그와 같은 뛰어난 후보군 가운데에서 리트의 최상위 고득점자를 추려, 자기소개서를 살피고 구술 면접을 시행하여 발표력과 사고의 순발력까지 보아 학생들을 선발해간다. 이런 극소수의 선택받은 인재들은 이제 주어진 3년 동안 가장 귀중한 시간과 한 학기 천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학비를 쓰면서 학계와 실무계에서 인정받아온 교수들과 더불어 훈련하는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그 과정은 실로 비인간적인 극한의 경쟁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결국 막판에는 자질구레한 판례의 암기력으로 법조인을 선발하고 있으니, 누가 이러한 제도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미각과 손재주가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 프랑스 최고의 요리학교에 모아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 3년간 수련하도록 하였지만, 이후 요리사자격증을 부여하는 시험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수 천 개의 라면 뒷면의 조리법을 외워서 쓰라고 하는 모양새다. 이론과 실무의 능력을 겸비한 요리장인을 양성할 것 같이 꾸미고서 3년 내내 레시피나 외우도록 만들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간판사기’이자 국력의 낭비이다.

이 모든 불행의 근원에 변호사시험제도가 놓여 있다. 역지로 이를 대비하는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며, 아는 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일선 교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인 법무부에게는 덜어내기 어려운 막대한 책임이 있다. 지금 시험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지금 상황에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난을 피할 도리가 없다.

II. 법률가의 역할

변호사시험법 제1조는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한다. 여기서 법률지식이라는 광범위한 단어 뜻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안들을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실정법과 그 해석을 위한 이론 및 그것을 적용한 여러 판례를 대상으로 한다.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란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법실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필요한 지식과 구체적인 기술을 말한다. 암기 시대의 종말 선언은 이러한 변호사시험의 목적에서 이어지는 것이다.

1. 인공지능 시대의 법률가

그렇다면 곧 다가올 본격적인 A.I.의 시대에 필요한 법조인의 역량은 무엇일까? 그에 대한 대비로서 로스쿨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변호사시험은 무엇을 학생들에게 물어야 하는가? 우리가 전혀 접해보지 못한 수준의 질과 양을 갖춘 법률, 판례, 문헌 조사는 이제 A.I.이 해야 할 일이다. 향후 2~3년 안에 기존 이러한 단순한 업무만 하

8) “취업 어려운데 로스쿨 갈까”...리트 응시자 또 사상 최다. 2023학년도 응시자 1만4620명(한경 2022.06.08.). 고려대학교의 경우 2,800여 명이 리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던 변호사들의 역할은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사된 자료를 태도로 한 법해석과 법적용은 여전히 법조인의 몫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얼마전까지도 A.I.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직종의 대표로서 ‘화가’나 ‘작곡가’, ‘소설가’ 같은 예술분야의 창작자가 언급되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와 같은 예측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예상과 달리 현재 일반인이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의 약한 A.I.도 기존 창의성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영역에서 기대 이상의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다.⁹⁾ 아래 그림은 모두 A.I.가 그려낸 것이다.



여기서 Hanbok 디자인을 주목해보려 한다. A.I.에게 ‘동양인 여성’, ‘Hanbok’ 등의 몇 가지 단어를 포함시켜 그림을 그리도록 명령하면 짧은 시간 안에 매우 많은 디자인을 제안하여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스케치북을 놓고 색연필로 도안하던 Hanbok디자이너의 일은 달라질 것이다. 인공지능이 제안한 수많은 Hanbok디자인 가운데 필요에 맞게 선별하기만 하면 번거로운 과정을 대부분 생략할 수 있다.¹⁰⁾

가까운 미래에 법적 판단 과정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고 가정해본다. 법률, 판례, 문헌 등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은 물론, 극히 일부의 사안을 제외하면 법해석 및 법적용의 기초도 인공지능이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초기에는 단순한 법률관계에 대한 법적용만 담당하게 될 것이지만 아주 짧은 세월 안에 그 조합형태로서 매우 복잡한 사안에 대한 포섭까지도 무리 없이 지원할 수가 있다. 그 결과물을 내어놓는 시간은

9) 노벨상 받은 중국작가 모옌 챗GPT로 글 작성 고백: “나는 도서관을 받는 위화를 칭송하는 글을 써야 했는데 며칠을 고민해도 아무것도 써지지 않아 어느 학생에게 ‘원청’ 등 위화의 책 제목과 ‘발치’를 포함한 핵심 키워드 목록을 넘겼다(‘발치’는 위화가 과거에 치과의사로 일했기 때문임). 그러자 순식간에 셰익스피어 스타일의 문장들이 1천 개 이상의 단어로 생성됐다.”(연합뉴스 2023. 5. 19.).

10) 지금 판례암기 위주의 로스쿨 교육은 위 Hanbok들의 재료와 수치를 외우게 하는 것만큼이나 현실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가치도 전혀 없는 것이다.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짧아질 것이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업무는 인공지능이 해낼 것이 확실하다.

1. 정보(국내 외 법률, 판례, 문헌 등)의 수집(외국 자료인 경우 번역)
2. 정보의 분석 또는 종합
3. 사안에 위 정보를 대입한 결과 제안

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을 이용할 때 인간이 법률가들은 과연 어떠한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를 묻는 일만 남았다. 이 영역에서 법률가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고, 바로 여기에 법학교육의 중점이 놓여야 한다. 인간 능력이 요구되는 영역, 즉 인공지능 역량의 한계 밖의 업무를 구별해내는 방법론적 근거를 여기서 상론할 수는 없다. 법률(또는 그 요건) 간 일반화 정도의 차이, 데이터 모델링의 한계, 가치평가 개입의 불가피성, 알고리즘 절차의 중립불가능성(= 편향성), 절차참여자에 대한 설득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가까운 미래의 발전 수준에서 A.I가 감당하기 어려워져 여전히 사람이 해내야 하는 업무로 남는 것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¹¹⁾

첫째, 사안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사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안 자체를 처음 인식하는 사람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 당사자나 사안을 체험한 제3자가 사실관계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정보를 옹기는 과정이 절차의 맨 앞에 놓인다. 만약 CCTV 등 관찰하는 기계장치를 통해서 인식된 상황이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안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적어도 당분간은 인간의 인식능력에 의존한다.

둘째, 사실관계를 이루는 정보 가운데 선별하는 절차는 사람이 감당한다. 이 과정에서 위에서 취합한 전체 정보는 법에 포섭될 가능성 및 필요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나뉜다. 법률 구성요건을 A.I도 이미 표준화된 기준으로 인지하고 있기에 그로부터 정보를 걸러낼 수 있지만, A.I.에게 분석시킬 정보를 투입하는 것은 ‘당분간’ 법률가들이 해내야 하는 작업으로 남을 것이다.

이후 단계의 ‘사안의 구성’ 및 그에 대한 ‘법적용’은 -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 A.I.가 할 수 있는 작업이다.¹²⁾

셋째, 구성된 사안에 해석된 법률을 상응시켜 도출된 여러 제안들 가운데 택일하는 작업은 법률가들이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일부에서는 A.I.가 이 역할까지 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면서 근거가 뚜렷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실제 삶의 과정을 같이 하는 주체가 그 최종역할을 담당하는 데에 더 많은 이들이 신뢰할 것으로 생각한다.¹³⁾

11) Timmermann/Gelbrich, Können Algorithmen subsumieren? Möglichkeiten und Grenzen von Legal Tech, NJW 2022, 25면 이하 참조.

12) 구성된 사안과 해석된 법률의 조응에 대해서는 홍영기, 법률 해석의 허용과 한계, 155면 이하. 위의 Timmermann/Gelbrich가 작성한 논문에서는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한계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인공지능이 디자인한 한복이 인간문화재가 만든 것에 못 미친다’는 말처럼 당연하게 들린다. 인공지능이 법조인을 완전히 대체할 능력을 갖춘 상황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데, 왜냐하면 그런 미래에서라면 법조인양성교육 자체가 테마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인공지능이 제안한 결론 가운데 오류가 있다면 그에 대한 수정 및 재입력을 통한 정보화 또한 현재로서는 법조인이 해야 하는 일이다. 단지 정보를 조합한 것을 넘어 어떠한 법리구성만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테두리를 정해주면 그것을 통해 다시금 A.I.는 새로운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다.

다섯째, 이처럼 인공지능의 제안 및 그에 대한 택일과정을 통해 얻어진 법효과를 절차참여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이해시키는 과정은 여전히 인간인 법률가들의 몫이다. 결론에 대한 승인은 법효과의 일부이므로, 이 또한 넓은 의미로 소송의 전과정에 포함된다.

2. 교육의 방향: 기본의 중요성

미래에 대한 예측은 모든 법률가에게 부정적인 조건만을 떠올리게 하는가? 검색을 통해서 얻는 여러 정보들을 모두가 순식간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로스쿨 신입생과 경력이 오래된 법조실무가의 실력이 같아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나아가 판례와 이론을 찾아서 인용할 수 있다면 이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포함, 누구든 법조인과 같은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 결과 특별한 법률지식인이라는 사람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인가?

위에서 ‘법실무’의 모든 과정을 언급하였다. 만약 ‘이론’을 위와 분리·대조되는 관심사로 생각하거나¹⁴⁾ 법실무에 완전히 종속된 대상으로 여긴다면 이하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론’은 실정법의 이념과 원리·원칙을 포함하여 실무를 이끌어가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주의되어야 하는 전제적 당위이다. 이론이 부족한 법조인은 법률과 과거 판례를 비판 없이 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절차로 여기거나, 오로지 사실관계의 특징만을 강조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으로 이끌고자 하기 쉽다. 이처럼 진행되는 법실무는 스트로크 자세를 제대로 반복하여 숙련하지 않은 채 네트 앞에서 공을 저편으로 넘기는 데에 급급한 배드민턴 경기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말단의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정법의 뿌리를 이루는 법이념과, 법적용 이면에 놓인 원리적인 기초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이 시대와 미래세대의 법조인역할이 놓여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론은 어떻게 습득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배워왔던, 그리고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기초로부터 출발한다. 법전원에 입학한 학생들은 공부를 시작하면서 법조문이나 판례를 찾는 기초적인 자료습득 방법과 더불어, 각 법과목영역의 존재의의

13) ‘챗GPT 판사’ 등장… 도쿄대서 모의재판 열려: 재판을 지켜본 40대 여성은 “판사가 인간이었다면 좀 더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판사가 AI라서 이점도 있는 것 같다. 피고인이나 증인의 외형 등 인간 판사라면 영향을 받는 것들에 대해 AI는 영향을 받지 않으니 더욱 공평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50대 남성 방청객은 “사람의 판결과 기계의 판결을 모두 비교할 수 있어 재밌었다. 현시점에서 형사 재판은 인간 판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법률신문 2023. 5. 21.).

14)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연세대·고려대 법학연구원, 로스쿨에서 법학 교육과 평가 385면.

와 특징 그 법이 분화된 까닭(= 법의 이념)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주요 법원리들을 배우게 된다. 예컨대 민사소송법을 접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법이 존재하게 된 근거와 법의 연혁, 그리고 그 존재배경에 놓인 문화와 지혜를 배운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어지는 소송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원리를 학습한다. 그런데 실제로 바로 이 과정까지가 해당 법학과목이 목표하는 학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이다. 그 이후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와 같은 원리로부터 연역된 것이거나 그 구체화를 돕는 예시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뿌리(= 법이념)와 기둥(= 원칙)을 튼튼히 완성한다면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줄기들(= 이론), 그리고 그 줄기로부터 벌어나는 잎과 열매(= 학설과 판례)들을 어렵지 않게 구체화할 수가 있다. 즉 이론적인 토대가 굳건히 갖추어져야만 학설과 판례의 근거와 논증방식을 스스로 추론해낼 수가 있다.¹⁵⁾ 잎사귀와 열매로부터 줄기와 뿌리가 생겨날 수 없듯, 위의 반대방향으로 진행될 수는 없다. 학설과 판례를 많이 익힌다고 해서 원칙과 이론이 귀납되지는 못한다.¹⁶⁾

사법기능은 과거와 동일하지만 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외국과의 공법·사법관계가 국내문제와 다름없이 진행되는 상황, 그와 똑같이 병행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환경·교통·금융·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불과 몇 년 전과 지금이 확연히 구별되는 지금의 배경이다. 생활세계의 복잡성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 사법역사에서 1950년부터 2000년까지 겪게 되었던 변화보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의 환경변화가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새롭게 닥치게 되는 대부분의 사안은 기존 법률에 의해 획일적으로 포섭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개별 법률가들의 사안에 대한 유연하면서도 적합한 대응이 더 중요한 때가 된 것이다.¹⁷⁾ 정보가 모두 공개되고 기계가 응용해줄 미래 상황에서는 법원리로부터 이러한 다양한 개별 정보를 분석하고 유형화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즉 기본이 확실한 법률가는 세부적인 개별사안의 처리에서도 좋은 논증과 유연한 창의성을

15) 이것이 법률가에게 필요한 소위 'legal mind'이지만 이 단어는 사건을 접할 때 다른 방법보다 법적인 해결방법을 앞세우는 것, 관련 법률과 판례를 쉽게 떠올리는 것으로 격하되어 쓰이곤 한다.

16) 소위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간 학자들의 시각은 서로 다르다. 일부 학자는 판례가 구체화하지 않은 이론을 로스쿨에서 다루는 것 자체를 비판한다(김태명,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방안, 40면 이하). 예컨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라는 테마는 오로지 이론적인 관심 때문에 다루어오던 지극히 현학적인 내용에 그쳤지만, 최근 판례(결정례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08헌마629 결정)가 생겼으므로 비로소 논의실익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윤동호, 로스쿨의 형사법교육과 변호사시험 소고, 398면 이하; 김성룡, 로스쿨에서 형사법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143면 참조). 이런 주장은 '문제중심적', '귀납식'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 원칙과 규범으로부터 연역하는 시각이 법학에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놓치고 있다. 이론 및 이론의 구체화를 위한 사례를 연습하는 것은 그것과 위상학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한 실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법리를 하나의 멋들어진 예술작품으로 감상하기 위한 것(이상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형사실무 교육방법, 65면)이 아니다. 법학에서 이론지향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상돈/김나경, 법학교육방법의 개선방향, 4면 이하.

17) 같은 지적으로는 연세대·고려대 법학연구원, 로스쿨에서 법학 교육과 평가, 369면. 예컨대 인공지능이 법률과 판례, 해석론을 빠짐 없이 학습한 이후에 그 그물망을 피해가는 법익침해를 제안하고 누군가 그것을 실천한다고 가정해보면, 오직 그 정보수준의 해결책만 아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발휘한다. 다양한 방식의 스트록 연습을 하루 만 번 씩 반복한 사람이 선수가 되어, 그 이후에 닥치는 여러 상황에 반사적으로 다양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제 법학교육은 고정된 법률, 유사한 선판례를 찾아 사안에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습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어떠한 기초사실을 토대로 어떻게 구성하여 어떠한 법리를 적용하여 어떤 결론을 내는지가 실제 법률가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추상성이 있는 이론과 법리에 대입한 이후에 그 결론을 연역해내는 데까지 도달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점이 현재와 미래에서 '간단히 습득할 수 있는 정보' 이외의 법학과 법실무의 능력을 좌우하는 관건이다. 그리고 이를 배우고 익힌 몇 번의 중요한 경험은 이후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공통적인 바탕이 된다. 기초를 튼튼하게 갖춘 법률가라면 어떠한 개별적인 법문제가 있어도 원리로부터 답을 찾아낼 수가 있기에 특별한 법률문제, 전문적 법과목을 반드시 배워야만 그 법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III. 제안

변호사시험을 개선하고자 하는 과거와 현재의 논의는 주로 ① 자격시험화, ② 합격률의 재조정, ③ 선택법과목 폐지 또는 개선, ④ 응시횟수 제한과 예외, ⑤ 시험장소 문제, ⑥ 과목의 개편, ⑦ CBT 방식 도입, ⑧ 시험일 조정 등에 대한 것이었다.¹⁸⁾ 그러나 위에서 이와 같은 제한적인 개선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상황이 아님을 이야기하였다. 로스쿨 교육의 근본취지를 왜곡하는 변호사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A.I.의 발전양상만큼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법조현실을 감안하여, 지금 곧 실천할 수 있는 것과 추후에 달라져야 하는 내용을 구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1. 과도기: 대상 판례의 제한

(1) 원칙

앞서 1) 먼 과거와 최신의 판례를 모두 포함하여 암기해야 하는 판례의 수가 너무 많아서 수험생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 2) 그 안에는 지엽적인 정보에 불과하며 특수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으로서 이론적인 맥락에 닿아 있지 않은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 수험대비에 교육적 효과가 없다는 것, 3) 판례의 결론만을 익힐 뿐, 판례논리를 분석하거나 비평하지 않아 법률가로서 기초를 형성할 수 없게 하고 로스쿨

18) 여러 자료가 있으나, 김재봉 변호사시험 출제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81면 이하; 김종호/김재일,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적정 수에 대한 연구, 193면 이하; 성중탁, 변호사시험제도 등에 대한 평가와 그 개선방안, 31면 이하; 천경훈,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240면 이하.

교육과 괴리를 야기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현재로서 변호사시험에 판례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은 정답처리에 시비가 문제되는 경우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다음 단계에 제시할 시험의 다른 형태에 이르기 전에는 판례를 모범으로 하여 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서 취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로스쿨 3년 기간 동안 배워야 할 판례의 개수를 미리 지정하고, 그것을 중점으로 로스쿨 수업을 진행하며 바로 그 범위 안에서만 변호사시험문제를 출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법 200개, 헌법과 형법 각각 100개... 식으로 중요성이 높은 판례를 지정하고 그것을 각 로스쿨의 교수와 모든 학생이 공유하고 이를 지문이나 근거로 하여 변호사시험이 출제되게 한다. 지금의 문제은행방식은 이미 일정한 유형의 문제들을 출제해두고 그 가운데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것임에 반해 여기서 제안하는 방식은 문제의 유형과 구체적인 형태는 출제자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그 출제 소재를 일정한 판례로 국한하고 그것을 모든 로스쿨에게 알려 미리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출제대상 판례를 천 개 미만으로 반드시 제한해야 하며, 개선의 효과를 더 기대하려면 모든 과목을 통틀어 오백 개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제한의 효과

출제대상이 되는 제한된 판례를 모든 법전원 학생이 공유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학습과 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장 학생들의 암기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학년 때에 이미 범위 안에 놓인 기본판례는 충분히 익힐 수 있다. 교수자 입장에서든 분명한 학습의 대상을 놓고 지도하게 되어 수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암기에 치중하던 학습시간을 다른 방식의 공부에 할애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주요판례를 로스쿨 모든 학생이 숙지하고 있다면 이제 그 판례를 대상으로 하여 배후에 놓여 있는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절차과정에서 주장되었던 각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그에 속한 여러 논거들을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법전원의 차이는 있겠으나 예컨대 각 과목의 '기초'강의에서는 과목전체의 이념과 원칙을 공유한 후 주요대상판례의 태도 그리고 그것의 이론적인 배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 중점을 둘 수 있다. 각 과목의 '연습'시간은 이미 숙지한 판례의 이면에 놓인 여러 사실관계의 특유성과 논증방식을 심화하는 수업으로 진행된다.

법전원의 변호사시험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특정한 판례를 분석하면서 정확한 문제의식을 갖고자 하고, 관련된 여러 주체의 주장을 분석하는 동시에 더 좋은 논거를 찾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논증에 도움이 되는 관련 테마의 문헌을 많이 찾아보아야 한다. 시험출제의 대상이 아닌 판례를 공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해당 판례와 관련되거나 강의자나 학생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판례는 충분히 수업시간에 다루거나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기준이 되는 판례로부터 사실관계가 어떻게, 어느 정도 달라지는 경우에 어떻게 판례의 결론이 바뀔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응용적인 학습도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논거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더욱 분발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창의적인 논증에 대한 호기심도 커지게

된다. 자신이 능동적으로 생각한 의견을 말하고 쓰는 능력도 향상될 것임은 분명하다. 교수들은 판례 이면에 놓인 여러 사정들과 법원칙들을 다루는 역량 자체를 학생들에게 전달해야만 한다. 판례를 둘러싼 여러 논거들의 우월성에 대해서도, 그 바탕이 되는 이론들과 그것을 지탱하는 법원칙을 근거로 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놓고 학생들과 발전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기존 주장과 다른 논거를 찾아내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를 평가하고 추가적으로 더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교수들에게 요구된다.

(3) 문제점과 그 대응

제한된 판례를 배운다는 것에 대한 외부 인식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개혁으로부터 변화하게 될 로스쿨 교육의 방향전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하에서 언급할 다음 단계의 제안까지 알려진다면 충분한 사회적인 인식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다.

소수의 판례만으로 출제하고 채점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택형시험의 전 과목에서 수백 개 정도의 판례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매년 비슷한 문제로 출제될 것이다. 수험생들도 대부분 정답을 맞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일부 나태하거나 실수가 있는 학생들만 구별하게 된다면 선택형시험의 의의는 자연스럽게 축소된다.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수험생들만을 선별하는 P/F로 바꾸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선택형으로 시험변별력을 유지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선택형시험의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사례형 및 기록형시험의 중요성은 커진다.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여 여러 판례의 결론을 모두 알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 여러 문항을 쪼개어 묻고, 단지 판례의 암기여부에 따라 채점을 하는 지금의 방식¹⁹⁾은 유지될 수 없다. 사례형시험에서는 판례의 간략한 결론이 아니라 판례가 도출되기까지 주장되었던 여러 논거들과 판례의 결론에 이르는 논리 또는 그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까지 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기본판례와 기초사실이 조금 달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문제를 제시하면 기존 판례와 학설을 이용하되 사실관계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하여 관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물을 수 있다. 이러한 출제의 변화가 로스쿨교육의 개선을 주도할 것이다. 시험이 법적 논증능력을 묻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암기한 판례를 단순히 물었던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학생과 교수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 보론: 법전원협회의 ‘표준판례연구집’

법전원협회의는 몇 년 전 전국 로스쿨의 교수들에게 의뢰하여 이른바 ‘표준판례연구집’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지금 로스쿨 학생들은 표준판례가 발표된 것과 무관하게 여전히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판례를 암기하고자 만 여 개의 판례를 소개하는 소위 ‘요약집’에 의존하고 있다.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 변호사

19) 이에 대한 비판은 박정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47면.

시험이 표준판례 안에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전원협의회가 처음 ‘표준판례연구’시리즈를 기획하기 전, 적어도 연구자가 협의회에 제안한 것은 ‘변호사시험의 판례는 오로지 표준판례에 국한됨’이라는 조건을 명시할 것이었다.²⁰⁾ 그러나 협의회에서는 표준판례집에 수록된 판례 범위에서 변호사시험이 출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출제범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강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자의 전공은 중요도 높은 판례의 갯수 자체가 민상법에 비할 때 많지 않고 의미가 큰 판례에 대한 전공교수 내 공통관심이 확인되고 있기에 출제범위와 표준판례집의 판례가 크게 상이한 것은 아니다.²¹⁾ 그러나 예외 없이 범위 안에서만 출제된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목표인 학생들의 부담경감과 이론강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민법 등 다른 과목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하기에 학생들은 이제 표준판례집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

연구자는 목적과 유리된 상황이 된 이유를 관계자에게 직접 물은 적이 있는데, 자신의 판례집을 이미 출판하여 이용하고 있는 기존 저자들의 반발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요인이 있다면, 변호사시험개혁이 곧 법학교육과 법문화의 개혁 자체라는 기본 사고부터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²²⁾

2. 자료제공형 시험

(1) 원칙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때에 필요로 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목표에 이르기 위해 결국 변호사시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에 대해 문헌과 판례를 자료로 참조할 수 있는 상태에서 풀이할 수 있는지를 보는 형태이다(이른바 ‘오픈북’).

휴대폰을 누구나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시대에 방대한 자료와 정보를 머릿속에 넣어다녀야 할 필요가 전혀 없기에, 법률가로서 적합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사안을 접하면서 문제를 파악하고 논증을 구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신속하고도 정확히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 이후 스스로의 지적인 능력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주장이 창의적인 것이라면 더 높은

20) 명순구/홍영기,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자료집, 2019, 51면; 박정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43면 이하 참조.

21) 이창현, 10년간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시험의 분석과 개선방안, 71면.

22) 표준판례집 개정이 있을 수 있기에 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비판도 간략히 남기고자 한다. 소개된 판례의 숫자가 너무 많다. 형법총각론의 경우에 543개가 실려 있는데, 위에서 이야기한 심층적인 판례분석의 효과를 살리려면 100여 개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25개 로스쿨교수 25명이 ‘분야별로’ 판례 선별을 나누어 맡은 것도 큰 잘못이다. 그러다보니 중요성이 거의 없는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일수죄’의 판례와, 결정적으로 중요한 ‘횡령죄’, ‘배임죄’ 판례 개수가 비슷할 정도이다. 25명의 교수가 참여하였다면 각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례를 일정 숫자(예: 50개) 선별하도록 하여 많이 중복선정된 순서대로 100여 개만 추렸다면 실무나 이론 면에서 훨씬 의미 있는 판례만 골라 실을 수 있었을 것이다.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2) 방식

수험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자료는 모든 법조문과 판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문헌들이다. 향후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논문 등을 직접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문헌을 찾아보는 능력까지 본다면 국제화 시대에 더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선 법률가들이 자료를 찾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 놓이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과도기에는 지금 수험생들에게 법전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정보만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온라인 검색이 가져올 현실적인 우려를 고려한다면 주요 문헌을 발췌하거나 한정하여 데이터베이스로서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법원도서관에서 발행하는 ‘법고을LX’의 형식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잠정적인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다. 간행된 판례 및 이론과 관련된 주요 학술지논문들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수험생 스스로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어 답안작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법조문과 판례 그리고 학술논문만을 제공한다면 기존 학자들로 하여금 로스쿨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실용적인 논문을 많이 작성할 것을 우회적으로 권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로스쿨 교육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학술논문을 찾아서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3) 문제점과 그 대응

데이터를 미리 제공한다면 로스쿨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평소에 공부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검색을 통해서 충분한 분량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이러한 예상되는 부작용은 곧 새로운 시험제도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 이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대부분의 암기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즉 모든 로스쿨 학생이 일선 법률가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면 이제 실제 법조인으로 가장 중요한 역량인 문제파악능력과 법적 논증능력을 최대화하는 데에 교육의 목표가 집중될 것이다. 로스쿨 교육현장에서의 건전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출제하고 채점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을 것이다. 출제는 현실에서 있을 수 있거나 있었던 사례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굳이 여러 판례를 조합하거나 이론적으로 특이한 문제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현역 법조인과 같은 조건의 시험을 치르는 만큼 법률가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형식의 사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반면에 채점하는 작업은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채점과정에서도 법률이나 판례, 문헌을 잘 요약하고 받아적었는지를 보려 해서는 안 된다. 1) 사안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2)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주장과 논거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지, 3) 수험생이 취한 논증방식과 결론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독창적인 논거를 이용하였다면 추가적인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

‘모범답안’은 있을 수 없다. 채점자의 구미에 맞는 결론을 제시하였다고 해서 점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채점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다. 수험생의 생각해낸 사안풀이의 경로가 전혀 잘못 파악한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지, 논리비약이나 논리의 결여가 있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뛰어난 인재를 발견한다는 생각보다 법조인으로서 논리력이 크게 부족한 수험생을 배제한다는 방식으로 살피는 것이다. 지금까지 채점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은 기준만을 놓고서도 충분히 변별력 있는 출제와 채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사고 프로세스를 묻는 방식

(1) 원칙

향후에 선택형시험을 폐지하고 사례형이나 기록형 등 서술형시험을 실제 법률가들과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보게 한다면 1) 출제와 채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 2) 채점에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 P/F의 형식으로라도 객관식 시험을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다.

객관적으로 정답이 분명한 시험유형을 존치하고자 한다면 미래에는 지금 ‘선택형’의 대안으로서 법적 사고의 프로세스를 묻는 유형으로 출제하고 답하도록 하는 방식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 5지선다식 선택형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를 간단히 ‘설문형’ 시험으로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설문형 방식은 지금 설문조사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형식이다.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단순한 설문부터 복잡한 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묻고 그에 맞는 답을 수험생들이 체크해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2) 방식

예를 들어 어느 복잡한 사례문제를 출제한 이후에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수험생들에게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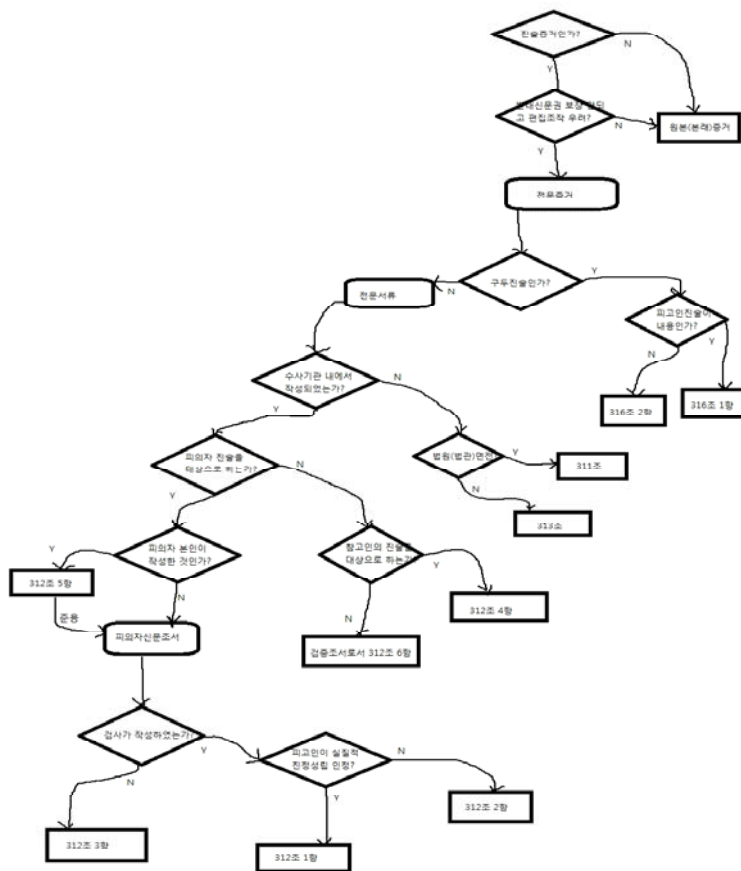
1번 물음: “이 문제는 형사법적 문제이다” OX 가운데 하나를 체크하면 그 다음 문제로 => 2번 물음: “여기서 중요한 관건은 행위자에게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 OX => 3번 물음: 이 상황은 과잉방위의 상황이며 이에 대해서는 책임의 경감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10번 물음: 피고인의 죄책은 상해미수에 해당한다. OX

이와 같이 ‘알고리즘’을 쫓아가는 문제 흐름을 수험생들이 정확히 따라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 개수는 많을 필요가 없고 적게는 십 수 개에서, 많으면 3, 40개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부터 잘못된 답을 하면 그 문제 전체를 풀 수가 없으

며, 곧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과목 간 뚜렷한 분류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것부터 가장 중요한 법률가의 능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설문을 시작해야 한다. 문제풀이에는 시간적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어진 사안과 그에 따른 해결방법을 신속하게 생각해내는 것도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역량이다. 아래 알고리즘 그림은 과거(근래 형사소송법개정 이전)에 연구자가 강의에 이용했던 것이다. 물론 시험유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전문법칙 사례의 해결을 위하여 법조문의 태도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지만, 사고력을 묻는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선택형처럼 판례의 단순한 결론을 묻는 것과 다르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실제 법률전문가처럼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역시 P/F로 하위권의 수험생들을 가려낸다면 출제와 채점의 어려움은 크게 줄일 수 있다. 채점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출제자가 개입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은 설문형평가가 보편화된다면 법률가들의 사고방식과 똑같이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곧 로스쿨 교육이 될 것이다. 학원에서 검증되지 않은 강사에게 이 능력을 배울 수도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설문형시험이 도입되어 객관식 평가의 방식이 존치된다면 최소한의 암기에 대한 필요성도 남아 있게 된다. 누구나 법조문과

판례, 이론을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최소한 어떤 경로로 문제에 접근하여 어떤 정보를 검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는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여러 법원칙과 원리 그리고 기본적인 판례를 숙지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보제공형(오픈북) 시험으로 바뀐다고 해서 수험생들이 아무런 내용도 암기하지 않아 일반인과 다를 없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4. 구술시험

미래의 인공지능 시대에는 법률가로서 말하기 능력이 대체불가능한 것으로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구술을 통한 시험의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아야 한다. 논리적인 표현과 창의적인 해결방식을 드러내어 보이는지를 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으며, 자료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지식이 충분히 공부되었는지도 함께 평가할 수 있다. 과거 사법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의 평가단계를 거치고 일정 기간 후에 구술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3차 행정고시나 모의법정(경연대회)처럼 집단 면접으로 진행된다면 사례를 제시하고 두 조로 나누어 법적 해결에 대해 공방을 벌이게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에 평가되는 대화의 기술 또한 중요한 법률가의 역량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려면 로스쿨에서 대화형, 문답형 수업²³⁾을 더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5. 요약

변호사시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실무환경에서 법조인이 활동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를 제공한 상황에서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사례를 문제로 출제하고, 그것을 실무가들이 작성하는 것과 같은 서면에 단말기를 통해서 쓰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이 구별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바로 위 설문형 시험은 채점의 객관성을 높이고 시험과정의 시간적 효율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

로스쿨 교육의 나아갈 바도 분명하다. 여러 법이념과 법원칙, 이론을 습득하는 것은 자신의 고유하면서도 창의적인 논증방식을 개발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된다. 이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으로 나아가는 데에 교수와 학생이 같이 협력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서면작성에 이르는 구체화의 작업 또한 교수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학생 스스로 자발적인 학습으로부터 가능해진다. 로스쿨에서 배울 때부터 여러 실무의 예들을 접하려 노력할 것이고, 이를 통해 설득력이 뛰어난 아웃풋 능력을 키우는 데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과거 변호사시험제도 개선에 대한 파격적인 제안이 나올 때마다 상대적으로 사소한 불편과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이에 대한 논의 자체가 더이상 발전되지 못했다. 대화를 단절시킨 주체들은 지금의 로스쿨 교육과 사법문화의 질적 저하의 부작용들이

23) 이에 대해서는 이상돈/김나경, 법학교육방법의 개선방향, 13면 이하.

다. 특히 이 시대의 고통과 다가올 미래의 혼란에 대해 시험운영의 주체인 법무부에 어떠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묻고자 한다. 또다시 상황의 심각성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 것 없을 것이 확실한 이유를 들어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시험운영주체 자리를 내놓는 것이 맞다.²⁴⁾

IV. 맺음말

판례의 결론을 많이 암기하는 사람이 유능한 법조인이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기에,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판례암기의 양으로 승부를 가리는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암기 위주의 변호사시험준비는 로스쿨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극한에 이르게 만들고 학교 교육을 왜곡시켜 법전문 내 구성원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더 나아가 법조인의 전반적인 수준을 저하하면서 건전한 법률문화를 해치는 바탕이기도 하다.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공부방법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치지 않는다. 로스쿨 교육의 전반, 더 나아가 우리나라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비로소 우수한 법조인이 양산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 자체와 법률문화 전반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차 달라지는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암기 대신에 창조적인 법적 사고와 정확한 논증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로스쿨교육이 이에 대비하여 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논증의 능력을 갖추도록 바뀌어간다면, 이로부터 가깝게는 우수한 법조인으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민의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것이며, 멀게는 그 피교육자들 가운데 학문후속세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원도 한층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변호사시험이 과거 사법시험에 비하여 단순하고 쉽거나 합격률만 높다는 것 또는 자격증을 남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로스쿨 졸업생들의 실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편견을 불식시키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제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는 완전히 다른 시험이 되어야 한다. 원칙은 하나이다. 현재와 미래에 능력으로 쓰임받는 법조인의 덕목 그 자체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로스쿨은 과거 법과대학이나 연수원과 다른 지향점을 보고 출발한 제도이니만큼 긴 길을 우회해서 돌아갈 필요가 없이, 획기적인 변화를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키우는 길을 향해 곧바로 나아가야만 한다.

24) 과도기에는 다른 기관에 이를 의뢰하는 위탁출제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재봉, 변호사시험 출제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99면 이하.

초록

단순하고 지엽적인 것을 포함, 만 개 이상의 판례를 암기하고 그대로 출력해내도록 수험생들을 몰아가는 지금의 변호사시험이 우리 법학교육을 파괴하고 있다. 손안에서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게 된 지 십 수 년이 지난 지금 머리 안에 암기되어있는 법조문이나 판례는 법률가의 능력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고도로 복잡해진 새로운 사안들이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으며, A.I.가 방대한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법적 해결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때이기도 하다. 변호사시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한다. 시험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금 산적해 있는 로스쿨 안팎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다.

장차 인공지능이 제공해주는 기초적인 법률, 판례, 문헌분석을 토대로 그 가운데 구성된 사안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설득력이 있는 제안을 선별할 수 있는 법률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변호사시험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에게 미리 자료로 제공한 상태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와 미래에 활동하는 ‘법률가의 능력’ 그 자체를 묻는 시험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로스쿨 내에서는 사안에 대한 구성능력과 더불어 각 실정법의 원리와 이론 그리고 그 이면에 놓인 법목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변호사시험의 주체가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깨달아야 한다. 법학교육의 파행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파괴는 로스쿨과 그 구성원인 학생, 교수의 탓이 아니다. 오로지 변호사시험 및 그 운영주체인 법무부의 책임이다. 법무부 스스로 변화된 사회에 대한 적응 및 변호사시험개혁에 자신이 없으면 시험업무를 다른 주체에게 넘길 것을 권한다.

김성룡, 로스쿨에서 형사법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외법논집 42-3, 2018

김태명,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방안 - 형사법 시험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연세 공공거버넌스학 3-1, 2012

김재봉, 변호사시험 출제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변호사시험의 출제위탁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38(4), 2021

김종호/김재일,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적정 수에 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37-1, 2023

박정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 고려법학 95, 2019

성중탁, 변호사시험제도 등에 대한 평가와 그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63, 2018

연세대·고려대 법학연구원, 로스쿨에서 법학 교육과 평가, 2019년 정기학술대회 발표토론문, 고려법학 95, 2019

윤동호, 로스쿨의 형사법교육과 변호사시험 소고, 형사법연구 23-3, 2011

이상돈/김나경, 법학교육방법의 개선방향, 고려법학 53, 2009
이상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형사실무 교육방법, 형사법연구 20-3, 2008
이승준, 현행 변호사시험의 문제점과 과제 - 형사법에 착안하여, 법과 정책, 24-3, 2018
이창현, 10년간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시험의 분석과 개선방안,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3-2, 2021
천경훈,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상사법연구 36-1, 2017
홍영기, 법률 해석의 허용과 한계, 법학연구(가톨릭대학교), 2008

Hellwig/Ewer, Keine Angst vor Legal Tech, NJW 2020
Timmermann/Gelbrich, Können Algorithmen subsumieren? Möglichkeiten und Grenzen von Legal Tech, NJW 2022

제 3 주제

한국의 리컬테크 현황과 법학교육의 변화

김명수 박사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한국의 리걸테크 현황과 법학 교육

김 명 수¹⁾

목 차	
I. 들어가며	IV. 리걸테크의 발전과 법학 교육 변화의 필요성
II. 한국의 리걸테크 현황	V. 맺음말
III. 해외 사례 비교	

I. 들어가며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기술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류의 모든 영역에서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나라 법률시장 또는 법률산업도 예외는 아니며, 법률 분야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리걸테크²⁾는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해 법률산업에 과학기술을 융합한 것으로 법조계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분야이다. 이것은 법률산업을 넘어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스쿨과 법조직역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므로 법학 교육과 변호사 실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리걸테크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의 대표적인 리걸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리걸테크 산업과 리걸테크 서비스와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리걸테크 산업이 발전하여 변호사 실무 또는 법조직역에 활용되고 있는데, 향후 법률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로스쿨이나 법학과 재학생에게 법학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왜 바뀌어야 하는지 그 당필요성과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한국의 리걸테크 현황

1. 리걸테크 산업 현황 및 활용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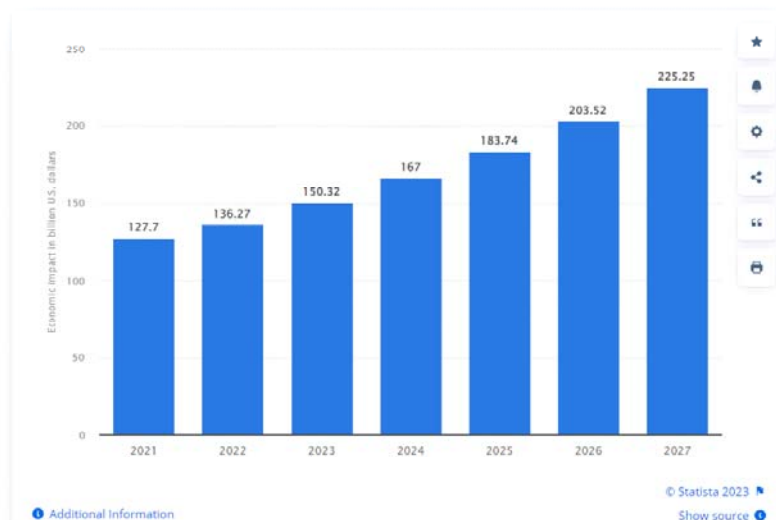
가. 리걸테크 산업 현황 및 발전 추세

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2) 문화체육관광부, “‘리걸테크’는 ‘법률 정보 기술’로”, 보도자료, 2021.12.1. 리걸테크는 우리말인 ‘법률 정보 기술’로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2021년 리걸테크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약 127.7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9.92%의 연평균 성장률(CAGR)로 성장하여 2027년까지 225.25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아래 그림 참조). 전 세계 리걸테크 스타트업 가운데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은 7개 사, 예비 유니콘 기업은 27개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리걸테크 산업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과의 갈등으로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³⁾

Legal tech economic impact worldwide from 2021 to 2027
(in billion U.S. dollars)



출처: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155938/legal-tech-economic-impact-worldwide/>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리걸테크 분야 중 ① 계약서 등 법률문서 검토 작업의 자동화, ② 판결문 검색 등 법률 리서치, ③ 소송 분석 등 예측 분야는 향후 활용 및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여러 규제로 인해 다소 리걸테크 산업이 뒤쳐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활용 리걸테크 상용 서비스 사례로는 ① 계약서 등 법률문서 검토 자동화 분야에서는 계약서 검토 인공지능 서비스 사례, ② 법률조사 분야에서는 판결문 검색 및 유사 판례 추천 서비스 사례, ③ 소송 분석 분야에서는 형량 예측 서비스 사례, ④ 기타 법무 분야에서는 법률문서 번역 서비스 등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⁴⁾

3) 더스탁(The Stock), '리걸테크, 규제개혁 바람타고 도약할까'...로앤굿, 70억원 투자유치 성공, 2023.1.30. <http://www.the-stock.kr>.

4) 강석구 외 8인,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2022.12.), 15-17면.

나. 리걸테크 활용 분야

리걸테크가 법률 분야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어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국내 연구자 중에는 분쟁 해결, 거래 자문, 규제 자문, 비영리 법률 구조로 구분한 사례도 있고, 검색, 분석, 작성으로 구분한 사례도 발견된다.⁵⁾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CodeX Techindex는 리걸테크를, ① Legal Analytics: 소송 관련 통계나 예측 정보 제공, ② Legal Research: 판례, 법령, 법률 문헌 등 조사 검색, ③ Legal Document Automation: 계약서 등 법률문서 검토 자동화, ④ Legal Marketplace: 변호사 매칭 ⑤ Legal Practice Management: 변호사 업무 관리, ⑥ Legal Compliance: 법률 준수, ⑦ Legal Education: 법학 교육, ⑧ Online Dispute Resolution: 온라인 분쟁 해결, ⑨ e-Discovery: 전자 증거개시 등 9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⁶⁾

2. 법무 분야에서 리걸테크 발전의 장애요인

이하에서는 법무 분야를 법률조사, 분석, 법률문서 자동화, 변호사 검색 및 중개 등으로 나누어 해당 분야에서 리걸테크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찾고자 한다.

가. 법률조사 분야

1) 법률자료 검색에 하급심 판결문 등 관련 빅데이터 확보가 시급

법률조사 분야는 단순히 판결문, 법령 등의 원문을 검색하거나 원문 중 특정 내용을 추출하는 수준을 넘어 판결문의 분석을 통해 판사 또는 법원의 성향까지도 분석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에 이르려면 막대한 분량의 하급심 판결문이 필요하다.

2) 법률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가공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 발생

법률서비스와 관련해서 판결문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등에 대한 유출 및 악용 우려가 있다.

3)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시 가명처리 또는 비실명화한 경우 검색 성능 및 신뢰도 저하 문제 발생

5) 이종주, “법률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동향과 이슈”,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산업 동향, (2018. 11. 27.); 정종구·정재권·김은수, “변호사의 법률 인공지능 활용방안- 국외사례와 국내현황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2020. 5.)

6) <http://techindex.law.stanford.edu/> (2023. 5. 24. 최종확인)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의 인격침해 문제를 이유로 엄격한 비식별화 또는 가명처리를 하게 되면 인공지능 기반 검색 엔진의 성능이 저하되고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어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성 문제

제4차산업혁명을 맞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도 자체 보유한 데이터를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업무 지원 향상을 위해 활용한다는 취지로 종전 검색 시스템의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나 기관 간 사업이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나. 분석 분야

1) 헌법상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기술로서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법관에 의한 판단 과정을 인공지능이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로봇 판사). 그런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헌법 제27조).

2) 판결문 등 데이터 확보 곤란

자동화된 문서분석 서비스는 법률 부서와 법률사무소가 광범위한 계약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법조인이 수작업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결과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다량의 비교 가능한 문서를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한데, 사법부는 하급심 판결문 등 중요한 사법데이터의 공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기술상의 한계

판결문과 같은 법률문서의 경우에는 법적 쟁점을 파악한 후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방식인데, 현재의 주류인 자연어처리 기술로는 이러한 추론방식에 따라 법률문서를 분석하기 어려울 것이다.

4) 알고리즘 차별(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

인간이 알고리즘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편견이나 훈련 데이터의 편견 때문으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는 재판 예측 서비스나 향후 로봇 판사의 경우에도 내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편향성 문제는 과거 인간의 의사결정자들이 역사적·사회적·정치적 맥락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알고리즘 형성 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을 위해서는 편향성 제거(de-biasing)의 문제는 중요하다.

5) AI가 법조인을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인공지능이 법관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실제로 복잡한 사실관계에서 핵심 쟁점을 뽑아내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서 인공지능에게 법관의 재판영역을 전적으로 맡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수준이 도달한다고 하면 인간 사이의 갈등 문제를 기계의 판단에 맡기는 데에 대한 반감이나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다. 계약서 등 법률문서 자동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계약서 자체를 공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문 못지 않게 대량의 계약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라. 변호사 검색 및 소개 서비스

1) 법적 규제

법률산업은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분야로 특히 국내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사법접근성 확대를 위해 변호사 검색 및 소개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2)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충돌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 변호사의 동업을 금지’(제34조)하고 있어서 리걸테크 업체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법률사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변호사에 대한 광고 규제도 엄격해 변호사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에 대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규정 개정을 통해 법률 플랫폼 참여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소송결과 등을 예측하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으며 법률서식자동화서비스를 운영하는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자체 징계하는 등 리걸테크 서비스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법률소비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잠재적 위험이나 해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를 하기보다는 리걸테크 산업발전이 법률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사법접근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제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범위를 점차 넓혀주고 리걸테크 산업발전에 걸림돌을 제거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디지털기반 교육방식으로의 변화 움직임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순한 교실 중심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저마다의 재능과 소질을 키워주고, 과목별 진도별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지방도시뿐만 아니라 일부 수도권 도심의 학교도 학생수 감소에 따라 폐교위기에 있는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교육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를 막고 교사들의 원거리 교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비대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며, 1:1 맞춤형 교육과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 과목별 진도에 따라 교육하는 방식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⁷⁾ 입법 정책적으로는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교육정보화 격차의 해소, 원격수업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교육방식을 요구하는 입법이 채택되고 있다.

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법률 제18459호)⁸⁾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 상황 속에서 교육환경도 그동안 등교·대면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공교육 체계가 원격수업 중심으로 뒤바뀌고 있으며, 이는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의 근거와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함으로써,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원격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 2021년 9월 24일 제정·공포되었다.⁹⁾

<주요내용>

- 가.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3조).
- 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고, 명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격교육을 운영하여야 함(안 제6조).
- 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운영, 원격교육콘텐츠 개발·보급,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장비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 라. 학교등의 장은 원격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여 학교등 내에서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

7) 최형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9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이유 참조. 2020년 10월 「초·중등교육법」 제24조 및 「고등교육법」 제22조 등 개정을 통해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8) 이 법률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의안번호 2107726)이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것이다.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이유 참조.

-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 마.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등 별도의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 바. 대학등의 장은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필요한 시설 공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13조).
- 사.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음(안 제17조).
- 아. 교육부장관은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22조).

나. 교육정보화 기본법안(의안번호 2108419,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이 법률안은 오늘날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각종 스마트기기의 등장 등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있으며, 이는 교육 현장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교육행정기관과 같은 교육 현장의 변화 속도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교육정보격차 발생과 정보화 역기능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하기 위해 교육정보화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교육정보화에 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코로나19 등과 같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교육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육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 단위의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지난 해의 시행계획의 성과 및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를 분석·보완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교육정보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마. 교육부장관, 교육감,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교육정보화 시책의 수립·시행과 교육정보화 사업 조정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두도록 함(안 제9조).
- 바.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교육정보화 활성화와 교육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교육정보화공동이용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대학의 장은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하여야 함(안 제13조).
아. 교육부장관은 교육정보화자원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기관, 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화 자원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대학의 장은 교육정보시스템의 재난에 대비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재해복구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 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백업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정보화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보급·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다.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으로 안민석의원안(의안번호 2110148과 조해진의원안(의안번호 2116986)이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두 법률안 모두 인간중심의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 인공지능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주요 내용 비교

안민석 의원안	조해진 의원안
가. 이 법은 인공지능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간 중심의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가. “인공지능교육”을 인공지능 원리, 영향, 윤리 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인공지능 활용 및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수·학습·평가 및 교육정책 수립 등의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인공지능”을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등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구현된 것으로, “인공지능교육”을 인공지능을 이해·개발하는 내용의 교육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교수·학습·평가 및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 및 지자체에 모든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기회 보장, 개인정보보호 등 역기능 방지, 윤리적 책임, 관련 기관과의 협력 책무를 부여(안 제4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도록 해야 하며, 인공지능교육의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등 책무를 가짐(안 제4조).	다. 인공지능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교육부에 국가인공지능교육진흥위원회 설치(안 제8조),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등 규정(안 제9조).
라.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은 연도별 인공지능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인공지능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안 제10조), 겸임교원 등 임용 특례(안 제11조).
마. 인공지능교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인공지능교육 윤리원칙을 제정·공표하고 이를 교육기관과 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안 제12조).
바.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교육의 활성화 및	바. 인공지능교육산업과의 협력 근거 마련(안 제14조).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인공지능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개발·확산 촉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여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그 순기능에 초점을 맞춘 선도적·진흥적 성격의 법률이다. 다만 이 법률에 대해서 정보격차에 대한 내용이 종전의 취약계층 중심의 정보 활용역량 강화 및 정보 접근성 보장 정책에 주안을 두고 있어, 국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고,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사회·기업·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디지털 포용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디지털 포용의 핵심적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해야 한다¹⁰⁾는 움직임이 있다.¹¹⁾

[표] 디지털 포용의 핵심 정책요소

핵심 정책요소		정보격차해소	디지털포용
역량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활용역량을 갖추는 것	○	○
환경	누구든지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	○	○
활용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	-	○
기반	시민사회·기업·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디지털 포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	○

자료: 디지털포용법안(의안번호 2107422), 검토보고서, 11면

Ⅲ. 해외 사례 비교

이 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에서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의 대표적인 변호사 검색 서비스인 대한변호사협회의 ‘나의 변호사 찾기’와 로톡의 변호사 검색 서비스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미국

가. Avvo 사례

10)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디지털포용법안(의안번호 2107422), 검토보고서, 10-1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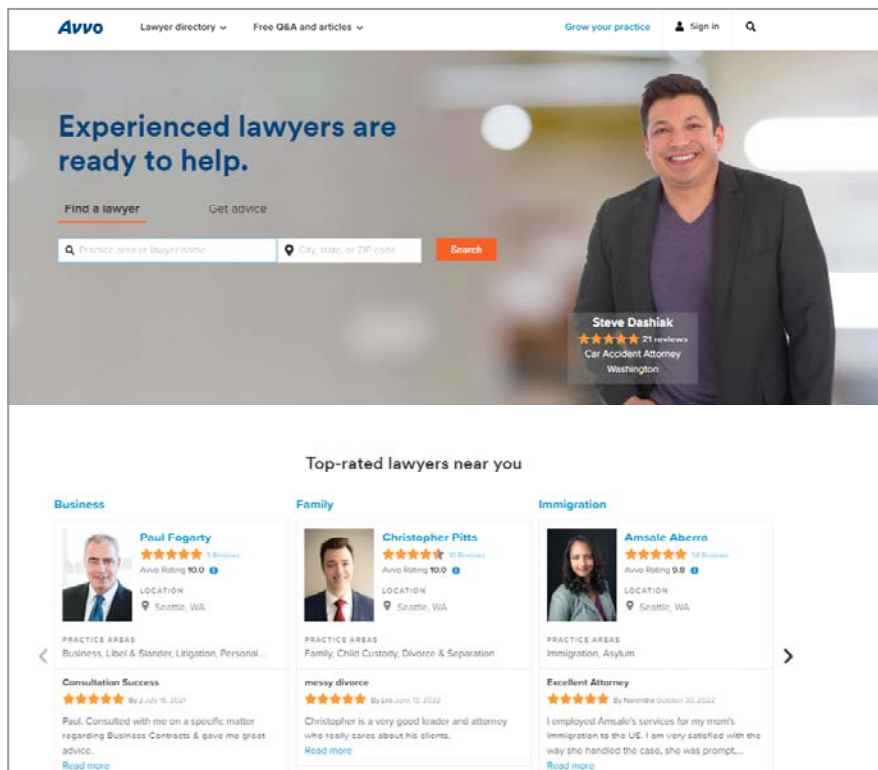
11) 관련 법안으로,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디지털포용법안(의안번호 2107422)과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디지털포용법안(의안번호 2118437)이 있다.

(1) Avvo 서비스 개관

Avvo는 미국 변호사의 97%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법률플랫폼으로 의뢰인이 의뢰하고 싶은 분야와 지역을 선택하면 조건에 부합하는 변호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코드엑스 분류표에 따르면 ‘검색분야’의 ‘변호사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속한다.¹²⁾

먼저 의뢰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면 화면에 변호사들의 프로필이 노출된다. 검색결과를 다시 여러 조건에 따라 필터링할 수 있는데, 이용자 리뷰 평점(Review rating), 변호사 경력(Year licensed), 상담료 무료 여부(Free consultation), 다른 실무 경력(Also practice), 다른 외국어 가능 여부(Other languages spoken), Avvo 평점(Avvo rating)¹³⁾ 등에 따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그림] Avvo 변호사 검색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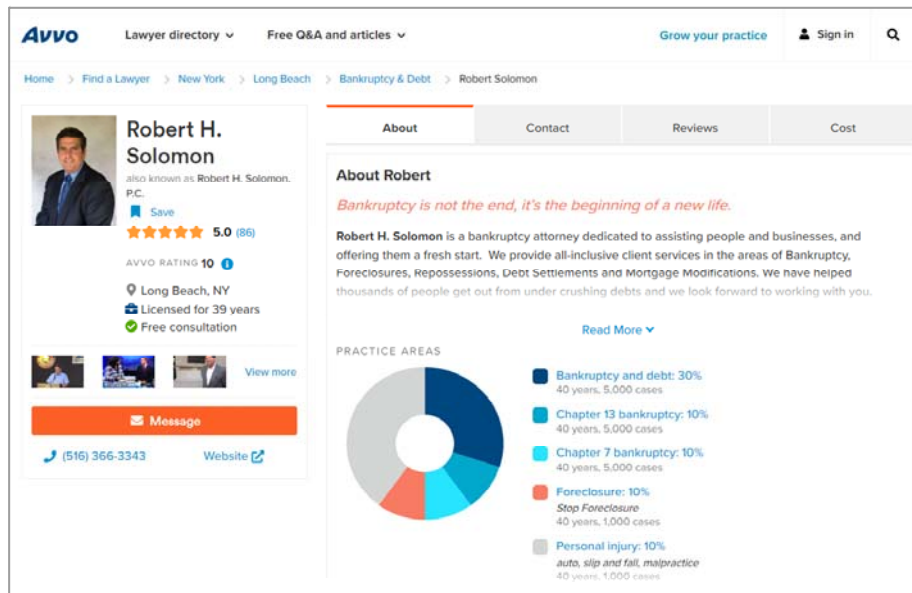
출처: Avvo 누리집(<https://www.avvo.com/>)

예를 들어, 미국 뉴욕주에 거주하는 파산사건 전문 변호사를 검색한 결과 그중에서

- 12) 정혜련, “리걸테크 플랫폼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미국 연방변호사협회모범규칙(ABA)과 관련사례를 중심으로-”, 유통법연구 제8권 제2호, 2021.8, 33-79면.
- 13) Avvo 등급은 등록된 변호사에 대해 수집된 공개데이터와 프로필에서 제공된 정보(업무경험, 실무 경력, 교육 등)에 기반해 자체 수학적 모델을 통해 등급을 설정하며, 변호사 개인의 법률지식이나 의사소통기술 등은 평가요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https://support.avvo.com/hc/en-us/articles/208478156-What-is-the-Avvo-Rating-> (2023. 5. 22. 최종확인)

특정 변호사를 선택한 경우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해당 변호사가 해당 전문분야에서 취급했던 사건 비율, 리뷰 평점, 상담료, 동료 변호사의 보증(Attorney endorsements) 등이 상세히 제공된다.

[그림] 변호사 검색 결과 화면



출처: Avvo 누리집 (<https://www.avvo.com/attorneys/11561-ny-robert-solomon-851475.html>)

Avvo에 등록시 변호사가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① Avvo Starter, ② Avvo Advanced, ③ Avvo Elite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Avvo Starter’는 무료회원을 말하며, 변호사 검색결과 하단에 노출되고 기본 프로필이 제공된다. ‘Avvo Advanced’는 기본 프로필 보다 상세한 프로필(enhanced profile)이 제공되며,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된다. 또한 표시될 때 경쟁 광고가 표시되지 않도록 한다. ‘Avvo Elite’는 Avvo Advanced가 제공하는 특성에다 독립적인 스폰서 광고를 노출시켜 주는 등 차별화를 두고 있다.¹⁴⁾

14) <https://www.avvo.com/for-lawyers/pricing> (2023. 5. 22. 최종확인). 정혜련, 앞의 글, 54-55면 참조.

Avvo Starter	Avvo Base	Martindale-Avvo Complete Profile Plus
A legal profile with the ability to engage in Avvo's Q&A forum where consumers seek legal help.	Your contact info, a legal resume and bio, and consumer Q&A forum to engage prospective clients.	Maximum exposure with your full contact info across our four legal sites.
Free	Contact us for current pricing	Contact us for current pricing
Find Your Profile	Get Started	Get Your Quote
✓ Basic profile Business address, practice area selection, online resume, peer endorsements and client reviews ✓ Directory listing ✓ Legal Q&A forum participation	Everything in Avvo Starter plus: ✓ Enhanced profile Full contact information, review spotlight and complete headline bio ✓ Higher placement in directory listing ✓ Open for business & virtual consultation availability icons ✓ Enhanced visibility Q&A forum answer card ✓ See consumer hiring intent from legal questions	Everything in Avvo Base plus: ✓ Enhanced profile across Martindale, Nolo, Lawyers.com and Avvo ✓ Premium Q&A forum ✓ Online scheduling ✓ Advanced analytics that shows all engagement performance across all of your profiles ✓ Review management and syndication across all of your profiles ✓ Dedicated account manager, specializing in marketing for attorneys
Optional add-ons for all bundles + Website creation and hosting + Leads from consumers + Live website chat		

출처: Avvo 변호사 등록시 제공 서비스(<https://www.avvo.com/for-lawyers/pricing>)

(2) 변호사 평점 문제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단

이 사안은 시애틀 변호사 2명은 Avvo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변호사별 비교 평점(Avvo rating)을 매겨 변호사 프로필과 함께 표시하는 것이 워싱턴 소비자 보호법(Washington Consumer Protection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피고에 대한 금지 명령과 금전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Avvo 측에서는 평점 시스템은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한 사례이다. 미국연방지방법원 ROBERT S. LASNIK 판사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기각 신청을 인용하였다.¹⁵⁾

나. LegalZoom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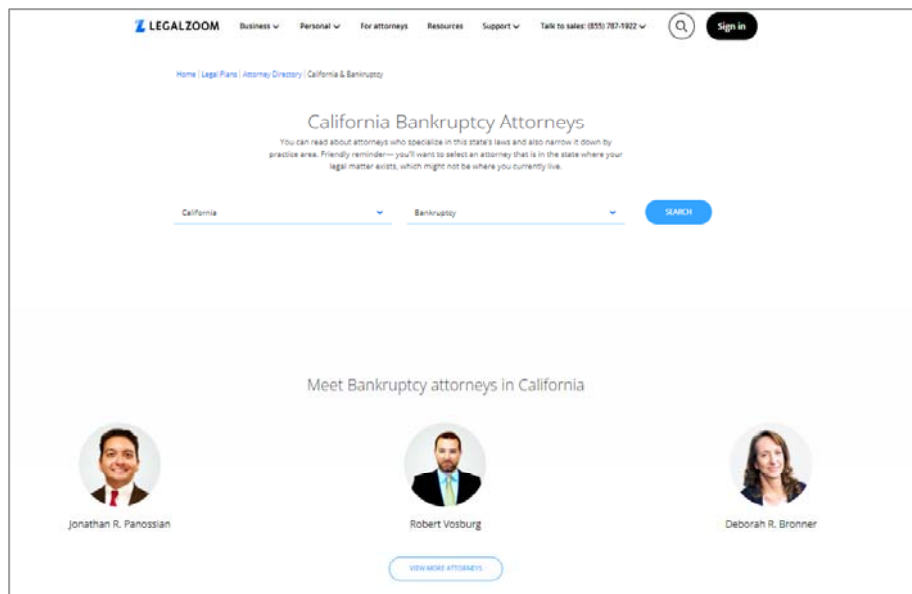
(1) 리걸Zoom¹⁶⁾ 서비스 개요

15) Browne v. Avvo, Inc., 525 F. Supp. 2d 1249 (W.D. Wash. 2007).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자세한 소개는, 정혜련, 앞의 글, 55-56면 참조.

16) 중앙일보 "아는 변호사 없다" 62%인데...선진형 리걸테크, 규제로 막나, 2022.4.26.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미국 리걸테크 기업 '리걸Zoom(LegalZoom)'은 2021년 6월 30일 미국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해 시가총액 3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기업과 개인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 사용자를 위한 법률서비스에는 법률문서 자동완성 서비스와 변호사 검색(Attorney Directory) 및 법률상담 서비스(Legal Assist Plan)가 있다.¹⁷⁾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살펴보면 ‘지역’과 ‘분야’를 설정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변호사를 추천해 준다. 그중 한 명의 변호사를 선택하면 해당 변호사의 경력, 전문분야, 지역변호사협회에 가입한 년도, 고객의 리뷰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그림] 리걸Zoom 변호사 검색 서비스 결과



출처: 리걸Zoom 누리집 (<https://www.legalzoom.com/attorneys/legal-plans/personal.html>)

(2) 리걸Zoom 서비스의 문제

(가) 플랫폼업체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불신

법률플랫폼 업체의 웹사이트는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아니고(not a lawyer referral service)’,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다(does not recommend)’라고 명시해 플랫폼업체와 고객(사용자) 사이에 신뢰관계(fiduciary relationship)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¹⁸⁾ 즉 플랫폼 업체가 고객의 변호사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고객 사이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면책조항). 특히 온라인 상에서 유형별로 제공되는 상담에 대해서는 그 정보가 변경되었는지 업데이트된 최신 상태의 것인지 사용자가 직접 상담 변호사에게

17) <https://www.legalzoom.com/attorneys/legal-plans/personal.html> (2022. 11. 3. 최종확인)

18) Natalie Cusson-Kelly Main, “LegalZoom Review 2022: Features, Pros & Cons”, (Forbes ADVISOR, Oct 19, 2022). <https://www.forbes.com/advisor/business/software/legalzoom-llc-review/> (2022. 11. 3. 최종확인)

다시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표] LegalZoom.com에서 면책 조항

ATTORNEY ADVERTISEMENT: This portion of the LegalZoom website is an advertisement. This portion of the LegalZoom website is not a lawyer referral service. LegalZoom does not endorse or recommend any lawyer or law firm who advertises on our site. We do not make any representation and have not made any judgment as to the qualifications, expertise or credentials of any participating lawyer. The information contained on this site is not legal advice. Any information you submit through this site may not be protected by attorney-client privilege and may be provided to attorneys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your need for legal services. All case evaluations are performed by a participating attorney.

출처: 리걸Zoom 누리집(<https://www.legalzoom.com/attorneys/legal-plans/personal.html>)

(나) 비용·시간의 효율성 문제

리걸Zoom과 같은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실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런데 리걸Zoom의 법률서비스는 아래 <표>와 같이 비싼 급행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된다.

[표] 패키지 수수료

Economy	Standard	FASTEST SERVICE Express Gold
\$149 + \$0 주정부 신청수수료 동부 표준시(Est.) 완료시간: 영업일 기준 30일	\$329 + \$0 주정부 신청수수료 동부 표준시(Est.) 처리시간 : 영업일 기준 15일	\$349 + \$0 주정부 신청수수료 동부 표준시(Est.) 완료시간: 영업일 기준: 영업일 기준 8-10일

출처: 리걸Zoom 누리집(<https://www.legalzoom.com/business/business-formation/inc-pricing.html#comparison>)

2. 일본

벤고시닷컴(弁護士ドットコム)은 일본 최대 법률상담 플랫폼으로 일본 변호사 4만 3,206명¹⁹⁾ 중 49.1%(2만1,205명)가 벤고시닷컴에 등록되어 있다.²⁰⁾ 일반인은 월 330엔만 내면 이들이 남긴 답변을 모두 열람할 수 있다.²¹⁾ 또한 벤고시닷컴은 2023년 2분기 챗GPT를 활용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²²⁾

19) 일본 변호사연합회, 基礎的な統計情報(2021年) 참조.

https://www.nichibenren.or.jp/document/statistics/fundamental_statistics2021.html

20) 벤고시닷컴, <https://www.bengo4.com/> 2023.5.23. 최종 방문.

21) 한경, 日 '법조계 우버' 벤고시닷컴, 전자서명도 접수, 2021.11.1.

22) 아주경제, 챗GPT 엄두 못 내는 국내 리걸테크...해외와 격차 어쩌나, 2023.3.30.

여기에는 무료로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모두의 법률상담(「みんなの法律相談」)’, 지역별, 분야별로 변호사 및 로펌을 검색할 수 있는 ‘변호사 검색(「弁護士検索」)’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모두의 법률상담’은 등록된 변호사가 일반 이용자가 해결이 필요한 법적 문제에 관해 답변을 해주는 공개 Q&A 서비스로, 이혼, 노동, 상속, 형사, 채권추심 등 다양한 분야의 119만 건 이상의 이용자 상담과 199만 건 이상의 현역 변호사 답변이 게시되어 있다.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는 상담해 준 변호사의 답변 중 가장 도움이 된 답변에 대해 “최고 답변(best answer)”²³⁾을 추가할 수 있고, 사이트에 ‘최고 답변’이 표시되며 동시에 답변해 준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할 수도 있다. 벤고시닷컴 누리집에는 ‘활약 중인 변호사 순위(活躍中の弁護士ランキング)’를 통해 최근 30일 동안 당사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활동(모두의 법률상담에 대한 답변 등)을 독자적으로 수치화하여 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변호사 검색’ 서비스는 ‘지역’과 ‘분야’를 검색 조건으로 설정해 두고 있으며 상세 검색 기능을 선택하면 ‘변호사 검색’과 ‘법률사무소 검색’이 나뉘어 있다.²⁴⁾

[그림] 벤고시닷컴 변호사검색 화면



출처: 벤고시닷컴 누리집(<https://www.bengo4.com/>)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기 위해 일괄 견적(一括見積り)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①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입력하면 ②

23) ‘최고 답변’이 가장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며 질문자가 해당 답변을 가장 만족스럽다고 보았다는 의미이다. <https://www.bengo4.com/bbs/> (2022. 11. 2. 최종확인)

24) <https://www.bengo4.com/search/> (2022. 11. 2. 최종확인)

이 요청을 수락하고자 하는 변호사들로부터 변호사의 ‘대응 방침’과 ‘비용’ 등이 적혀 있는 견적 제안서를 받아보고 비교 후 ③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하여 직접 상담하는 방법이다.

[표] 벵고시닷컴의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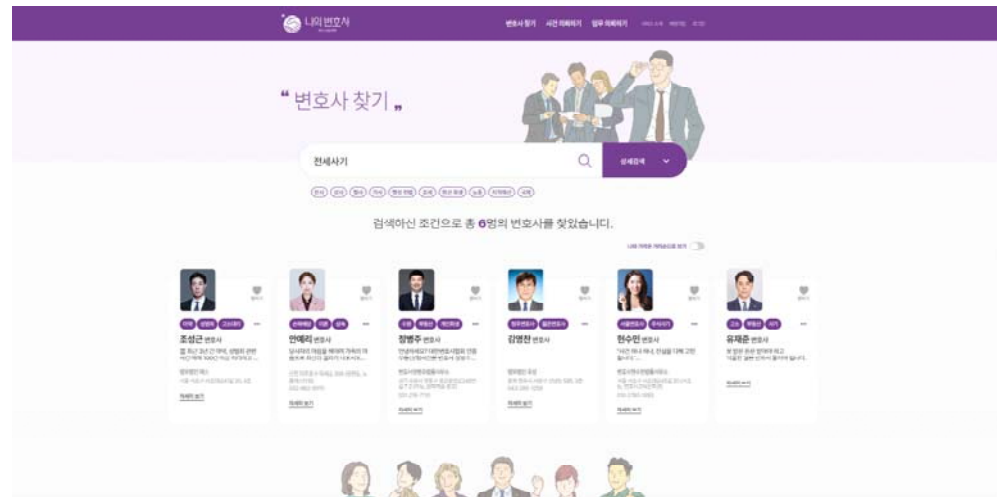
구분	모두의 법률상담/변호사검색 서비스 ²⁵⁾	변호사 상담
일반회원(무료)	무료	
프리미엄회원(월 330엔)	무료(단, 변호사답변 5건 이상 표시)	변호사 상담료 1시간당 약 1만엔

출처: 벵고시닷컴 이용약관(<https://www.bengo4.com/sp/static/rules/>)

3. 소결

국내외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변호사에 관한 기본정보와 사무실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객의 평가항목이 들어있다([그림] 로톡 검색 화면 참조).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변호사 찾기 서비스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기본정보와 사무실정보, 그리고 일부에 한해서 법조경력(판검사 경력), 업무사례(담당사건)나 학력이 추가되어 있다. 특히 국내에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변호사에 관한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한데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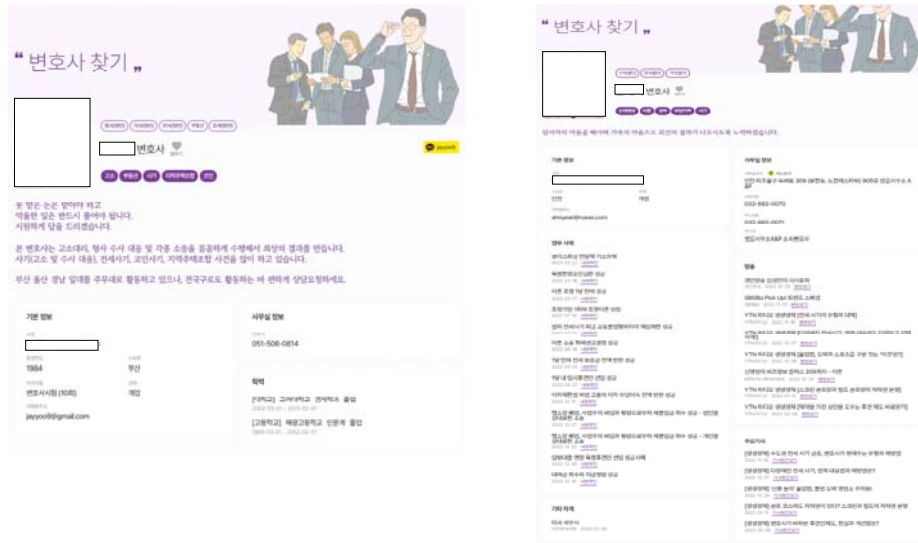
[그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찾기 서비스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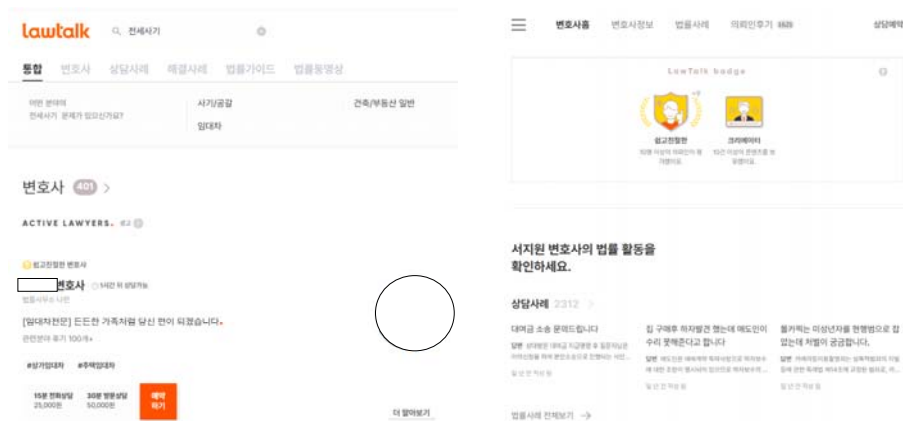
25) 대가를 목적으로 한 변호사 중개를 금지하는 일본 변호사법 제72조에 위반하지 않기 위해 벵고시닷컴이 제공하는 ‘모두의 법률상담’, ‘변호사 검색’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이용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그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찾기 검색 화면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

[그림] 로톡 변호사 검색 화면



출처: 로톡 누리집

IV. 리걸테크 발전과 법학 교육 변화의 필요성

1. 법학 교육의 위기

기술은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법무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의 법학 교육 방법이 학습의 관점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습의 효과 및 미래 법률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²⁶⁾ 특히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품이나 서비스가 적

지 않으나 그 가운데에 법률서비스가 없고 세계적인 법률가나 로펌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전부터 다양한 분야의 기초학문을 공부한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논리적 사고 훈련과 실무적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해 법률가의 사고방식을 갖춘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금까지의 교수자 일방적 정보전달과 교과서 암기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법률가로서 실무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고 비판했다.²⁷⁾ 하지만 로스쿨 체제가 도입되고 십수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현장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로스쿨 출범시 사례연구 방식 교육 강화를 통해 분쟁해결능력을 배양하고 문답 토론식 수업과 법학실무교육을 병행하고자 했던 교육취지가 로스쿨 시험과 합격정원이라는 걸림돌에 의해 퇴색해 창의성이 결여되고 획일화되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²⁸⁾ 특히 판덱텐 체제 중심의 법체계에 맞춰 학습 방법도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의 의미를 먼저 접하게 되고 짧은 시간 내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암기로 극복하려는 오랜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접했을 때 제대로 해결방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관련 유사 판례를 찾아 외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 법학 교육이 나아갈 방향

가. 디지털시대의 법무 기능의 변화

2019년 EY(Ernst & Young Global Limited)의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기업 내 법무 부서의 기능과 역할도 변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²⁹⁾ 우선 기업의 82%가 향후 24개월 내에 법적 기능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 있으며, 디지털준비와 혁신적인 기술 사용에 법무 기능이 재무, 인적 자원 관리(HR), IT 등 다른 부서와 달리 최신 기술의 채택이나 자금지원으로부터 혜택을 덜 받았고 뒤처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³⁰⁾

그리고 비즈니스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인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26) 오수근, 법학 교육방법에 대한 의문과 대안, 법학논집 제26권 제1호 통권 75호(2021.9.), 이화여자대학교, 1-2면.

27) 박정원·이성흙, 법학 교육방법 다양화와 정보, 통신기술 활용가능성 탐색, 교육법학연구 제21권 제1호(2009), 64면; 양천수, 법률가 양성교육 체제 정립기의 법학방법과 법학 교육, 법철학연구 제9권 제2호(2006), 법철학회, 31-56면; 오수근, 문제중심학습법을 활용한 법학 교육: 모의수업의 내용과 관찰을 중심으로, 법학 제47권 제4호(2006),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7면.

28) 동일 취지 최준선, 로스쿨 교육에 대한 반성, 법률신문, 2017.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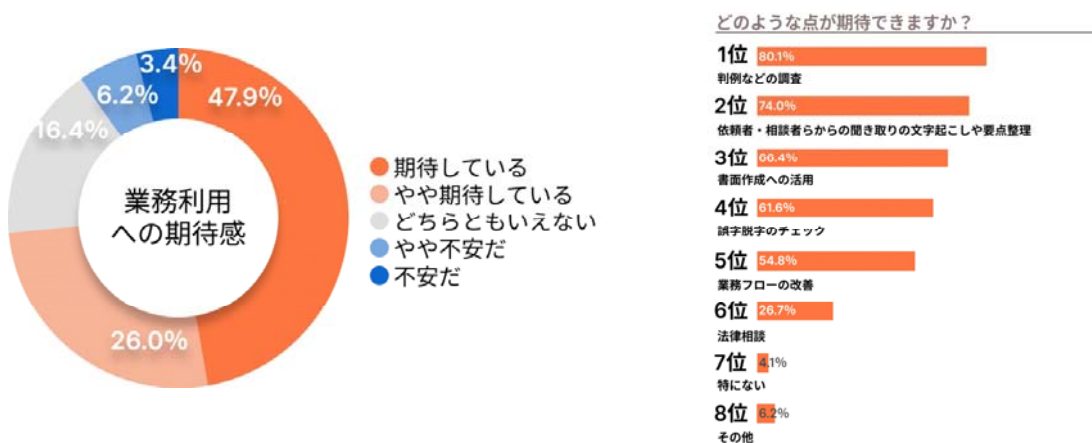
29) 2018년 후반에 전 세계 기업 선임법률실무자 1,058명을 대상으로 법률 부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https://www.ey.com/en_us/tax/why-the-legal-function-must-be-reimagined-for-the-digital-age

30) EY, Reimagining the legal function report 2019, pp.8-11.

필요한데 실제로 기업이 적합한 직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³¹⁾ 직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은 일상적이고 가치가 낮은 작업(low-value tasks)을 수행하는데 총 시간의 27%를 소요한다고 나타났다.³²⁾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향후 내부 직원에 대한 내부 교육 및 기술 프로그램을 통한 개선을 추진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능형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인력을 대체하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갈 수도 있다.

따라서 법무 부서의 종사자들은 디지털시대에 기술혁신과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이는 변호사 실무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2022년 11월에 출시된 ChatGPT가 다양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일본 최대 법률상담 포털 사이트 벤고시닷컴에서 일본 변호사를 상대로 채팅형 AI 툴의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³³⁾, 변호사의 약 30%가 챗 GPT를 이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메일 문안 작성, 법률 상담의 회답의 개요의 작성, 계약 조항의 확인 포함된 사안의 유사 판례의 조사, 음성의 문자 일어나. 필요 서류의 리스트화 및 관련 판례의 추출, 일반론(비법률 사항, 법률 사항 불문)의 개략적인 설명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³⁴⁾ 또한 70%가 넘는 변호사가 AI 도입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구체적으로 변호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판례 등의 조사와 의뢰자 및 상담자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요점정리, 그리고 서면작성에 대한 활용 등의 순으로 기대한다고 나타냈다(아래 그림 참조).



출처: <https://dime.jp/genre/1588882/>

31) 기업 5곳 중 3곳(59%) 정도가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EY, Reimagining the legal function report 2019, p.24.

32) EY, Reimagining the legal function report 2019, p.25.

33) 해당 조사는 벤고시닷컴 등록 변호사 146명을 대상으로 조사기간은 2023년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이루어졌다.

34) “弁護士の3割が既にChatGPTを利用、7割以上がAI導入に期待”, <https://dime.jp/genre/1588882/>

나. 미국 로스쿨 교육과정

미국 로스쿨 중 대표적으로 Yale, Cornell 및 Georgetown Law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법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리걸테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³⁵⁾

(1) 예일대학교의 ‘Technology in the Practice of Law’ 과정

예일대학교 로스쿨의 Fem Cadmus 교수는 법학 사서이자 법학교수로서 30년 동안 법학 연구 및 법률실무 기술을 가르쳐왔다. 그는 2022년 가을 기술적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실습 체험 과정인 ‘Technology in the Practice of Law’ 수업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수업을 개설한 이유에 대해, 디지털 세대가 로스쿨에 입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기술 사용의 의미를 알고 책임감 있는 사용자이며 비판적 평가자 및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사이에 상당한 기술 격차가 있음을 알고 학생들에게 데이터 마이닝³⁶⁾이나 사이버 보안과 같은 실용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VR(가상현실), 메타버스와 같은 Web 3.0 기술³⁷⁾과 같이 미래에 법률 업무에 통합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기술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실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하였다.³⁸⁾ 실제 학생들은 수업 중에 가상현실 헤드셋을 사용해보고 가상현실을 증거 절차에 적용하거나 메타버스에서 고객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기도 한다(아래 그림 참조). 이는 다양한 기술이 법적 사고 또는 실무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블로그 게시물이나 법률 기사, 논문을 읽는 것과 실제로 VR 헤드셋을 직접 착용하고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경험해 보는 체험수업으로 궁극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학생들로서는 향후 변호사로서 업무 수행 시 알아야 할 도구와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지고 기술과 법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있고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³⁹⁾

35) 그 밖의 세계 주요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리걸테크 접목 법학 과정에 대한 소개는, ARTIFICIAL LAWYER, LEGAL TECH EDUCATION GUIDE 참조.

<https://www.artificiallawyer.com/legal-tech-courses/>

36) 데이터 베이스 내에서 어떠한 방법(순차 패턴, 유사성 등)에 의해 관심 있는 지식을 찾아내는 과정. 데이터 마이닝은 대용량의 데이터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는 과정이며, 기대했던 정보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못했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2011. 1. 20., 전산용어사전편찬위원회).

37) Web 1.0인 월드 와이드 웹(WWW)은 사용자가 신문이나 방송처럼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는 것이었고, Web 2.0은 참여, 공유, 개방의 플랫폼 기반으로 정보를 함께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Web 3.0은 개인화, 지능화된 웹으로 진화하여 개인이 중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추론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활용될 것이다. 시맨틱 데이터를 이용하는 인텔리전트 소프트웨어와 같은 Web 3.0 기술은 자료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채택하며, 소규모로 사용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Web 3.0 - 웹 3.0 참조(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38) Law.com, Evolving Education: 3 Recently Launched Law School Legal Tech Programs, January. 5. 2023.

<https://www.law.com/legaltechnews/2023/01/05/evolving-education-3-recently-launched-law-school-legal-tech-programs/?slreturn=20230424113946>



출처: Yale Law School

(2) 코넬대학교의 ‘The Business of Law in Today’s Tech Economy’ 과정

기술과 법률비즈니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과정을 코넬대학에서도 신설하였다. 코넬 공대에서 로스쿨 겸임교수인 Ed Estrada교수가 리걸테크분야에서의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The Business of Law in Today’s Tech Economy’ 과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후 코넬 공대의 부학장이자 변호사였던 Matt D’Amore에게 교육과정 소개된 후 법학 및 로스쿨 학생에게 로펌의 비즈니스, 내·외부 전략적 고려사항, 기술이 법률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교과과정을 제시해주었고 이 아이디어가 2022년 가을에 정식 과정으로 채택되었다.⁴⁰⁾

(3)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Law)의 ‘The Judicial Innovation Fellowship’ 과정⁴¹⁾

변호사의 기술 역량 부족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막대한 손해로 이어지고, 법원의 기술 혁신 부족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때로는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나홀로소송 당사자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고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지타운대 로스쿨(Georgetown Law)은 ‘Judicial Innovation

39) Yale Law School, Learning About Law and Tech, Hands (and Headsets) On, December 20, 2022.

<https://law.yale.edu/yls-today/news/learning-about-law-and-tech-hands-and-headsets>

40) Law.com, Evolving Education: 3 Recently Launched Law School Legal Tech Programs.

41) 조지타운 대학교 2022-2023년도 커리큘럼은 Georgetown Law, Institute for Technology Law & Policy, Course Offerings 참조.

<https://www.law.georgetown.edu/tech-institute/academics/course-offerings/>

Fellowship (JIF)’ 과정을 개설했다. JIF 프로그램은 사법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세대의 리걸테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⁴²⁾

다. 급변하는 법률시장과 법학 교육 변화의 필요성

리걸테크는 기술을 법률 실무에 통합함으로써 변호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효율성을 창출했고, 때로는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리걸테크의 발전으로 인해 변호사는 법률 조사, 문서 검토, 법률문서 초안 작성 등 자신이 하는 일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 실무는 수십 년 동안 기술 발전과 함께 발전해 왔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ChatGPT를 비롯해 구글의 바드(Bard)가 출시되어 궁금한 질문이나 알고 싶은 지식을 AI를 이용해 답을 얻어낼 수 있게 되었다(아래 예시 참조).

(예) 구글 바드와 챗GPT 응답 사례 비교

<질문> 리걸테크를 활용한 미국의 법학 교육	
구글 바드	챗GPT
Legal technology (legal tech) is the use of technology to improve the delivery of legal services. Legal tech can be used to automate tasks, improve efficiency, and provide access to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legal tech is increasingly being used in legal education. Law schools are incorporating legal tech into their curriculum in a variety of ways, including: • Offering courses on legal tech • Providing students with access to legal tech tools • Partnering with legal tech companies The use of legal tech in legal	Legal education has been evolving with the integration of legal technology (legal tech) to enhance the learning experience and prepare future legal professionals for the rapidly changing legal landscape. Here are some ways in which legal tech is being used in legal education: 1. Online Learning Platforms: Legal tech has facilitated the development of online learning platforms that offer courses and resources for legal education. These platforms provide access to interactive lectures, multimedia content, and collaborative tools for students to engage with the material and each other. 2. Virtual Reality (VR) and Augmented

42) Georgetown Law, The Judicial Innovation Fellowship Program. <https://www.law.georgetown.edu/tech-institute/initiatives/georgetown-justice-lab/judicial-innovation/>

education has a number of benefits. It can help students to: - Develop the skills they need to use legal tech in their future careers -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technology is changing the legal landscape - Be more competitive in the job market The use of legal tech in legal education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but it is growing rapidly. As legal tech continues to develop, it is likely to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legal education. Here are some examples of how legal tech is being used in 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Courses on legal tech: A number of law schools now offer courses on legal tech. These courses typically cover topics such as the use of technology for legal research, e-discovery, and document management. Access to legal tech tools: Many law schools now provide students with access to legal tech tools. These tools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tasks, such as legal research, drafting documents, and managing cases. Partnerships with legal tech companies: Some law schools have partnered with legal tech companies to provide students with access to their products and services. These partnerships can help students to learn about the latest legal tech innovations and to get hands-on experience with these tools. The use of legal tech in legal education is a positive development. It	Reality (AR): VR and AR technologies are being utilized to create immersive learning experiences in legal education. They can simulate courtrooms, case scenarios, and legal environments, allowing students to practice their skills, observe courtroom procedures, and engage in simulated legal interactions. 3. Case Analysis and Research Tools: Legal tech offers advanced case analysis and research tools that enable students to efficiently access legal databases, conduct legal research, and analyze complex legal documents. These tools provide intelligent search capabilities, legal analytics, and citation analysis to enhance the research process. 4. Legal Writing and Document Automation: Legal tech solutions are being used to automate the process of drafting legal documents, such as contracts, briefs, and pleadings. These tools can assist students in understanding the structure and language of legal documents while enabling them to create accurate and professional-quality drafts. 5. Simulations and Gamification: Legal tech incorporates simulations and gamification techniques to create interactive learning experiences. Students can participate in virtual mock trials, negotiation exercises, and other simulated legal scenarios to develop practical skills and gain real-world experience in a controlled environment. 6. Collaborative Tools and
--	--

can help students to develop the skills they need to use legal tech in their future careers,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technology is changing the legal landscape, and be more competitive in the job market. As legal tech continues to develop, it is likely to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legal education.	Communication Platforms: Legal tech tools facilitate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students and between students and instructors. Online discussion forums, virtual classrooms, and video conferencing platforms enable students to engage in group work, receive feedback, and interact with legal professionals remotely. 7. Data Analytics and Predictive Modeling: Legal tech utilizes data analytics and predictive modeling to analyze legal trends, case outcomes, and legislative changes. By incorporating these tools into legal education, students can develop a deeper understanding of how data can inform legal strategies and decision-making. It's important to note that while legal tech enhances legal education, it cannot replace the value of traditional legal education methods, such as critical thinking, legal reasoning, and ethical considerations. Therefore, legal tech should be seen as a complementary tool to augment and support legal education rather than a substitute for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	---

출처: Bard / 챗GPT 베타버전

법률서비스 산업의 중요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교육 및 훈련 방식의 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법학 교육에 대한 새롭고 폭넓은 접근 방식이 필요한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Kodak이 디지털 사진의 출현을 등한시하고, Sony가 디지털 음악으로의 전환시기를 놓쳤고, 모토로라는 아이폰의 출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듯이 법률시장의 급변은 법학 교육에도 이러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시대의 조류가 되었고, 로

스쿨이나 법과대학에서도 이를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150년 동안 미국 로스쿨과 법률서비스 산업은 결합하여 법학 교육을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묶어 놓은 값비싼 상품으로 만들었고, 미국 법조인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은 특정 업무 영역이나 전문 분야와 상관없이 그리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다양화·다각화에 대응하지 않고 천편 일률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학 교육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 법학 교육의 방향

현행 법학 교육은 궁극적으로 변호사 실무와 연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AI 등이 변호사 업무에 도입될 경우 어떠한 기대 효과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지에 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리걸테크를 활용하면 변호사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특히 간단하고 반복된 서면 작성의 시간이 단축되어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판례 및 문헌 검색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변호사 업무인 상담, 자문, 송무 등 여러 업무 중에서 간단한 상담서비스를 리걸테크를 활용한 법률서비스로 대체할 경우 변호사 본연의 전문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반면에 현 시점에서 보면, 정확도가 낮아 실무에 바로 확대해 활용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조만간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보안이나 책임 소재 기타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책임 범위를 한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동향을 지켜보고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AI에 의한 법률상담 서비스 등이 시작되고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의 법적 소양이 함양되면 종래의 법률사무소는 상당수의 고객 유출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세계적인 회계 및 컨설팅 전문기업인 KPMG가 현재부터 2025년까지 법무 기능(legal function)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전 세계 회원사 KPMG Legal Operations Transformation Services 소속의 실무 전문가들이 예측한 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⁴³⁾ 리걸테크의 장·단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법학 교육의 방향 설정을 올바르게 할 때가 온 것이다.

1. Half of the legal team will not be lawyers.
2. CLM(contract lifecycle management) will be as ubiquitous as ERM and CRM.
3. There will be no line between Legal Tech and Tech.
4. Reading data will be as important as reading legal terms.
5. Legal teams will be measured on strict KPIs such as the money they make for the business.
6. Client experience will be at the heart of legal delivery.

43) Stuart Fuller, 10 predictions: the legal function in 2025, KPMG. <https://kpmg.com/xx/en/home/insights/2020/12/future-of-legal-article-series.html>

- | |
|---|
| <p>7. All standardized legal work will be permanently subsumed into the business.</p> <p>8. Contracting processes will go completely online, slashing time to complete deals.</p> <p>9. Managing culture and shifting mindsets will be essential.</p> <p>10. Legal Chief Operations Officers will be just as important as General Counsels.</p> |
|---|

V. 맺음말

1. 법학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법학이 규범학으로서의 순수성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술과 융합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리걸테크를 활용한 법학 교육은 국민의 사법접근권 제고 및 급변하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 다양한 법학 교육 방법 강구

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고 있으며 사회와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그 중심에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디지털 과학기술이 있고 이 기술과 각각 다른 분야의 기술이 서로 융합해 또 다른 시너지를 내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급변하는 사회와 산업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절실하다.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맞지 않는 인재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법학 교육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과거의 천편일률적이고 암기 중심의 교과과정으로는 한계가 있고 법학 교육을 법 과목 중심으로 패키지화해 온 것도 탈피해야 한다.

3. 전문성 고취 및 학제 간 접근 방식 개선

법학전문대학원과 소속 교원은 학생들이 변호사처럼 사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 법률 지식과 실무적 훈련을 어느 정도 쌓게 해서 법률서비스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법률서비스 산업과 시장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학제 간 연구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예일대학교의 사례에서 공과

대학과 법과대학 사이의 학제 간 연구 또는 수업 과정을 보았듯이 교육의 주안점을 학문 간 경계를 넘는 융합, 미래에 대한 통찰력, 기업가와 창업 정신을 함양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 법학 교육의 미래는 변화와 혁신의 시기입니다. 법률산업은 기술, 고객 요구 사항 및 규제 환경의 변화를 포함한 여러 요인에 의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학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학 교육기관은 미래의 변호사를 준비시키기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학 교육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추세가 있습니다.

- 기술의 역할 증가: 기술은 법률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법학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리걸테크는 학생들에게 실습 경험을 제공하고, 법률 연구를 돕고, 법학 교육 비용을 절감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률 검색 엔진은 학생들이 법률 자료를 빠르고 쉽게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도구는 관련 법률을 찾고, 법률문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용 교육의 강조 증가: 법률산업은 고객 요구 사항과 규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학 교육기관은 학생들이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실습 교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십을 하거나 법률 클리닉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다양성과 포용성의 강조 증가: 법률산업은 더 다양하고 포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학 교육기관은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성과 포용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학 교육기관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교수진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비용 효율성의 강조 증가: 법학 교육 비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학 교육기관은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용 절감 기술의 사용, 온라인 교육의 확대 및 전통적인 법학 교육 모델로부터 탈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학 교육의 미래는 변화와 혁신의 시기입니다. 법학 교육기관은 미래의 변호사를 준비시키기 위해 이러한 추세에 적응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 마이크로소프트사(MS) Bing, 한국 법학 교육의 미래

4. 리걸테크의 맹종이 아닌 인간의 윤리적 가치 실현이 중시

불과 몇 년 사이에 ‘4차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등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법률서비스 시장도 이에 맞춰 재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법학 교육에 기술적 설계를 담아내더라도 인간중심의 가치 실현과 인권 존중 사상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참과 거짓의 논리를 명확하게 구분 짓지 못하고 참도 거짓도 아닌 누구나 보고 들어 그럴싸하게 보이는 문장으로 표현해 사용자를 현혹시키는 문제(알고리즘의 문제)와 차별적이고 편향적 시각의 자료를 학습하고 산출해 내는 문제(편향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이러한 가치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토 론 문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석구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도엽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토론문]

리걸테크의 발전을 위한 문제의식과 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

김제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문제의 제기

○ 리걸테크는 이제 법조계에서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대세로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이 맞고 있는 상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II. 법학교육과 변호사시험

○ 리걸테크의 발전으로 판례에 대한 단편적인 암기와 이해 중심의 법학교육은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음이 명확하며, 이에 따라 사고능력과 비판적 시각 및 창의성을 높이는 법학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변호사시험도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홍영기 교수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함.

○ 법학교육에 있어서도 단순히 규범학으로서의 법학이 아닌 기술과 연결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면서도 법조인으로서 리걸테크를 맹종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른 법리의 창의적 적용 및 인간의 윤리적 가치의 실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김명수 박사님의 지적에도 전적으로 공감함.

○ 이와 같은 대전환이 로스쿨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교수들의 개인적 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각 로스쿨과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변호사시험의 정원 통제를 철폐하는 것임을 추가적으로 지적하고자 함. 사실상 정원제로 운영되는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 하에서 리걸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나 시험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법적 근거 없이 변호사시험을 사실상 정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 관행이 조속히 철폐되어야 함.

III. 법조실무에서 리걸테크의 정착을 위한 전략 수립

○ 법조실무에서 리걸테크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리걸테크 업계와 법조실무계 특히 변

호사 업계와의 원만한 협조가 긴요함.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리걸테크의 발전에 대해 변호사업계가 매우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상호간 고소 고발 등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상황이라고 생각됨.

○ 이와 같은 문제는 장기적인 방향에서 보면 리걸테크가 정착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적 동향이고 자연스런 일이며, 그 측면에서 보면 변호사업계가 근본적인 태도 및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그러나 이와 함께 리걸테크 업계에서도 변호사 업계의 거부감을 적절히 불식시키고, 리걸테크 업계와 변호사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와 같은 노력이 잘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됨.

○ 리걸테크의 정착 과정에 변호사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전문자격증 영역에 대한 침해와 관련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변호사자격의 영역 침해 우려 없이 리걸테크가 변호사들의 영역을 오히려 확대해 주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다양한 단계의 리걸테크 중에서 1차적으로 변호사나 판사 검사 등 법조인 및 전문직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리걸테크가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이를 위한 리걸테크 업계의 구체적 전략 수립과 법제 정비를 하는 과정에 Busch 교수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은 리걸테크의 단계적 구분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리걸테크에 대한 법조실무계의 또 하나의 우려는 플랫폼 산업 공통의 문제로서, 리걸테크가 다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독점을 심화하고 공정성을 해할 것이라는 우려일 것임.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는 바, 기존의 플랫폼 산업에서 상생을 위하여 취한 조치를 살펴보고 리걸테크에도 적용해 보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입법 노력 등에서 제안하였던 공정성 확보와 상생을 위한 구체적 해결 방안들을 참고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됨.

○ 과거에 변호사법 개정논의 과정에 ‘변호사 중개제도’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외국 법제와의 비교 등을 포함하여 상당히 깊이 이루어졌던 바 있는데, 변호사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바 있음. 이와 같은 논의 성과는 변호사 중개 앱의 제도화 논의과정에 참고될 수 있을 것임.

○ 미국과 영국의 경우 alternative legal service provider 개념이 형성중인 바, 여기에도 리걸테크가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 이와 같은 변화도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음. (끝)

▣ 토론문

법학교육과 변호사시험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문 교수

리걸테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AI 시대 필요한 법조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예견할 능력이 거의 없는 주제에 토론자로 참가하게 되어 많이 배우고, 특히 홍영기 교수님의 ‘변호사시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는 미리 원고를 읽어 보았기에 제 의견을 조금 남기고자 합니다.

1.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시험의 문제점과 개선안

로스쿨이 2009년 3월에 개원한지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어느 누구도 로스쿨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또 변호사시험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른 것 같으며, 저 역시 홍영기 교수님의 주장과는 다른 점이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수준에 머문 지 오래되고 극소수 우수한 로스쿨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시험에 낙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저도 로스쿨 교육기간이 3년으로 짧은 점, 변호사시험 방식의 복잡성, 5회까지 응시자격만을 주고 있는 소위 ‘오탈자’ 문제까지 있어서 상당히 파행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과연 극소수 우수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험에 대해 불안감을 가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에는 올해 전체 합격률이 81.46%에 이르고¹⁾ 서울권의 로스쿨은 전체 합격률은 낮더라도 초시 합격률이 70~80% 정도이기 때문에 솔직히 합격률이 너무 낮아서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과한 주장이라고 판단됩니다.

1) 2023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고려대는 75.82%, 연세대는 73.94%이며, 중앙대의 경우에는 초시 합격률이 100%이면서 전체 합격률이 72.60%이었다.

‘변호사시험은 과목을 불문하고 방대한 판례의 단순한 암기 여부를 묻는다.’고 하셨는데, 실제 객관식시험이나 사례형시험에서도 배점이 낮은 경우에는 판례의 결론만 알면 되고 또 그 정도를 기재하면 되기도 하지만 그 많은 판례를 어떻게 단순 암기를 할 수 있을까요? 판례의 결론에 이르는 논거를 이해하지 못한 공부는 오래 기억에 남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을 판례의 단순암기시험’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²⁾ 이전에 서울대 이용식 교수께서 저서인 형법총론 머리말에 ‘판례는 이해할 필요가 없다. 이해하면 오히려 손해다. 판례는 결론만 암기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신 적이 있는데,³⁾ 저는 위 주장이 당연히 틀리며 로스쿨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올바른 태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천경훈 서울대 교수께서 수험서에 언급된 판례의 숫자가 민사법, 형사법, 공법을 합해 총 12,581개라는 통계를 통해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만개가 넘는 판례를 외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물론 위와 같이 많은 판례를 외우면 당연히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겠지만 정말 그렇게 외운 수험생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⁴⁾ 그리고 만여개의 판례를 소개하는 소위 ‘요약집’을 학생들이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그런 요약집이 있기는 한지를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⁵⁾

개선안으로 ‘민법 200개, 헌법과 형법은 100개 등으로 판례를 한정하고 그 판례를 깊이 있게 공부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오픈북 시험의 경우에 궁극적으로 외국문헌까지 찾아보는 능력까지 본다면 국제화시대에 더 경쟁력이 있는 법률가를 선발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긴박한 시험장에서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외국문헌을 찾아서 참고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⁶⁾

2) 형사법의 경우에 선택형시험에서는 드물게 있겠지만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예상하지 못한 판례가 쟁점이 된 출제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3) 이용식, 『형법총론』, 박영사, 2018, 머리말에 의하면 ‘변호사시험을 위해서는 가장 얇은 교과서 한권과 가장 얇은 최근 3개년 판례정리집 한권만 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그 이상 보면 낙방한다. 변호사시험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알고 있는 것을 쓸 시간도 없고 답안지공간도 없다. 그저 조문과 판례의 「결론」만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판례는 이해할 필요가 없다. 이해하면 오히려 손해다. 판례는 결론만 암기하면 된다. 판례의 논거를 이해해 보았자 답안지에 쓸 시간도 공간도 없다. 판례를 열심히 공부하여 이해한 논거를 쓰려고 하면 변호사시험에 떨어진다. 판례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암기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것도 결론만. 그것도 최근 3개년 판례의 결론만. 변호사는 판례의 결론만 알면 되는 것이다. 판례형법이라는 이름하에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책들은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4) 반면에 이용식 서울대 교수께서는 ‘가장 얇은 교과서 한권과 가장 얇은 최근 3개년 판례정리집 한권만 보면 충분하다는 주장과도 전혀 맞지 않다.’

5) 홍영기 교수님의 논문 각주 22에서 로스쿨협의회에서 표준판례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25개 로스쿨 교수 25명이 분야별로 판례선별을 나누어 맡은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이미 몇분이 1차적으로 선별하여 작성한 후에 이를 나머지 로스쿨 교수들이 검토 의견을 내어 수정을 하였다.

6) 로스쿨 교수들에게 로스쿨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실용적인 논문을 작성할 것을 우회적으로 권고하는

2. 로스쿨교육의 책임은 대부분 교수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10년간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시험의 분석과 개선방안”이란 논문에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주장하기도 하였고,⁷⁾ 제도상 여러 문제점과 제약이 있긴 하지만 로스쿨 교육은 결국 로스쿨 교수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이 아무리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수들이 수준 높은 법지식과 실무 능력을 가르치고 싶어도 학생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강의인데, 왜 외면을 받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판결요지를 잘 정리해 주지 않는 로스쿨 교수보다는 간결하게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원 강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비판하시는데, 왜 로스쿨 교수들은 학생들을 위해 판결요지를 정리해 줄 수 없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한국외대 로스쿨에 형법을 담당하시던 교수님 한 분이 퇴직을 하시고 충원이 아직 되지 않아 이번 1학년 1학기에 모 법대 교수님이 형법총론 강의를 맡게 되셨는데, 그분은 매시간 너무나 열성적으로 강의를 하시고 교과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시험 바로 다음 주에 채점평을 하시고 채점한 답안지로 학생들에게 개별 확인까지 해주시는 반면에 기존 다른 과목 교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1학년들 사이에 ‘강사의 강의가 최고’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법률신문에 ‘점점 쪼그라드는 법학교과서’라는 칼럼을 썼다가 어느 커뮤니티에 공유가 되고 많은 로스쿨 학생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댓글 중에는 ‘로스쿨 학생들이 솔직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아지면 교수저는 고사하고 강사저도 잘 보지 않을 것이다.’는 글과 ‘송OO 교수님, 이OO 교수님 등의 저서와 같이 좋은 책들은 읽지 말라고 해도 읽는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제 자랑이 되어 죄송하지만 본문만 1460면인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매년 1000권 이상 판매가 되고, ‘사례형사소송법’은 교수저 수험서로서는 처음으로 2000권을 출간하는 등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50명 정원에 불과한 변방 외대 교수의 저 두꺼운 책을 단지 판례가 엄청나게 많이 수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로스쿨 학생들이 사보고 있을까요?

것이라는 주장도 현재의 논문심사평가시스템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며, 이를 꼭 논문형식으로 해야 할지도 의문이다.

7) 이창현, ‘10년간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시험의 분석과 개선방안’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박영사, 2021, 241-249면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사례형시험의 개선방안으로 ① 통합형 출제에서 형법과 분리된 독립 출제 방식으로 전환, ② 문항수를 감축하고 각 문항의 배점을 상향, ③ 표준판례집을 고려한 출제 판례의 선정과 판례의 기재 정도, ④ 채점기준표의 공개를 통한 문제와 기재례의 공유 및 비판 활성화 등을 주장하였다.

종합토론문¹⁾

강석구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법률산업의 위기

20세기 말미에야 비로소 상용화되기 시작했던 소형컴퓨터(PC)와 정보통신(ICT) 기술이, 21세기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사회 전체를 급변시켰다. 이른바 “DNA”로 불리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된 산업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전통적인 산업들은 이들 기술을 기반으로 하거나, 활용한 신(新) 산업 분야로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진보는 이른바 DNA 기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보안,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AR), 전지·에너지기술, 로봇기술, 드론기술, 영상기술, 자연어기술, 클라우드기술 등 전 분야에 공통된 현상이며, 이들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과 각종 서비스 산업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법률산업(legal industry)에 과학기술(technic)을 융합한 현상을 나타낸 신조어인 이른바 ‘리걸테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18세기의 산업혁명 수준이 아니라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이전하는 정도의 혁명적 상황에 인류사회가 직면하고 있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가 되었다. 즉,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된 국가나 산업, 기업 또는 개인은, 철기 시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족과 문화가 사라졌듯이 도태될 운명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IC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고, 이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메타(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국경을 초월한 이른바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세계 경제질서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법률은 질서와 제도의 근간을 이룬다. 해당 국가의 핵심 가치가 담겨있고, 제도와 권리, 경제·문화 등이 공고하면서도 정치한 자국 언어체계를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다. 동시에, 국가 간, 또는 지역 간의 연대를 통해 전 지구의 법률 역시 하나로 융합되어가는 과정도 함께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법률시장과 외환시장을 포함한 모든 ‘시장’(market)을 빠른 속도로 타국에 개방해가고 있다. 이는 바꿔말하면, 전 세계가 서로 잠식해가면서 상호 의존하는

1) 이 토론문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22년 정책연구보고서인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의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하였음.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 지구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규범 또는 국제표준인 이른바 ‘뉴 노멀’(New Normal)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당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있다. 작은 스마트기기 안에 PC, 정보, 금융, 통신, 영상, 음성 등의 기술이 집약되고, 각종 정보가 전 지구에 분산·관리될 수 있을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될 수 있었고, 각종 인터페이스를 통해 인류가 새로운 가상세계를 창조하거나, 가상과 현실을 상호 연계하여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만큼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비약적으로 개선되었고, 계약, 금융, 투자 등 중요한 법률행위조차도 손바닥 위에서 가능해질 정도로 생활이 편리해졌다. 물론, 네트워크화되고 정보화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인간관계만큼이나 갈등과 분쟁도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법률산업의 발전은 이러한 혁명적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법원·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의 문턱은 높고, 사법정보는 적기에, 또는 필요한 당사자들 사이에 공유되지 못한다. 여전히 법률가들을 향한 일반국민의 접근은 어렵고, 종이로 인쇄·등사된 문서가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심급이 올라갈수록 더 원격지에 소재한 기관에 직접 출석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정부부처 간에 각자 관리하는 정보는 물론이고, 사법부가 직접 관리하는 정보(예: 가족관계, 등기 등)조차 수수료를 내고 유료로 제공받아 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을 검색해보면 대부분 법인 홍보 콘텐츠 일색일 뿐이고, 소속변호사 약력과 업무별 문의처 정도만 최소한도로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나라 법조계가 기성 질서와 관행에 안주한다고 해서, 또는 법학계가 과학기술과의 통섭이나 융합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법조계가 현행 변호사법 체제에 안주하면서 기득권을 고수하고 법학계가 이를 방관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법률 시장은, 영어나 중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법무를 필두로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에 빠르게 잠식되면서 군소 로펌과 개인변호사부터 시장경쟁력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자연어기술을 기반으로 한 알파벳(구글)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까지 법률산업에 뛰어들 경우 우리나라 법률산업은 물론이고,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조차 위태해질 수 있다고 예상할 정도이다. 심지어 리걸테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내 법률산업의 고사 수준을 넘어 국권(國權)의 중핵에 속하는 사법주권의 기능적 형해화까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명칭 개정 이후의 첫 법무정책 연구사업으로서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연구책임자 강석구)를 수행하였고, 법무 분야, 민사소송 분야 및 형사사법 분야의 리걸테크 현황,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응, 리걸테크와 정보보호 이슈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① 사법접근권 제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 수렴 필요, ② 리걸테크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 필요, ③ 리걸테크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개선 필요, ④ 리걸테크 도입을 위한 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 등을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으로서 제시한 바 있다. 그런 만큼, 리걸테크 인재 육성을 위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 리걸테크 센터를 개원한 것은, 리걸테크에 대한 실질적 대응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하면서도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2. 리걸테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강조한 대목은 크게 2가지였다. 그 중 하나는 ‘법률수요의 진정성’이었고, ‘법률수요의 진정성’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않았지만 국민의 새로운 권리로서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에 대한 무지’였다. 리걸테크 대응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법률가 및 법학자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에 무지하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이전의 학부과정에서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극소수 예외도 있지만, 이들 역시 과학기술의 대강만을 알 뿐이고, 각론(detail)에서는 명확한 한계를 드러낸다. 더욱이 법률시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들이 독점하고 있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유관 산업계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리걸테크 산업계 역시 원천기술을 가진 기업보다는 법률지식을 가진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마저도 20개 정도에 불과한 리걸테크산업협회 회원사가 사실상 전부이다. 원천기술을 가진 기업에서 리걸테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관련 선행연구나 조사자료가 인터넷에서 쏟아져 나올 텐데 찾기 어려웠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빅테크 플랫폼 기업조차도 리걸테크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즉, 원천기술 관련 산업계나 투자자들은 아직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가치를 찾지 못했고, 몇몇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한 법조계에서만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실, 종래의 법률산업은 법률전공자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홍영기 교

수님께서 역설한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시하는 법학교육 및 변호사시험의 전환을 통해 리걸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면 충분했을지 모르고, 이것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인 점도 분명하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법률산업도 리걸테크로의 변화가 가속되는 이상, 가까운 미래의 법률산업은 법률전공자만으로는 지탱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다. 그런 만큼, 리걸테크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위해서는 법조인력정책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고, 과학기술 산업계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에만 기반한 법률산업계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리걸테크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력과 투자자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리걸테크 법률산업은 외국 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외국 기업의 리걸테크를 우리 법조인과 법률전공자가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미 알파벳(구글)은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자연어 기술 연구에 돌입했고, 자연어 기술에는 법률언어와 같은 고급 기술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요구되는 우리나라 법률산업의 독점적 구조 및 이로 인한 수익배분의 불공정 가능성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률시장 자체가 애초에 협소하고 부가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법 개정 또는 규제샌드박스 운용을 통해 독점적 구조를 일부 해소하더라도 과학기술 산업계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더욱이 법률산업의 기득권이 공고한 것처럼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기득권도 공고하고,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은 리걸테크 스타트업보다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리걸테크 산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정작 리걸테크를 실제로 추진할 인적 인프라가 현실적으로 구축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은 추진하기도 전에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① 대학원 과정 또는 기술인력 양성과정에 ‘법률공학’, ‘과학기술융합법학’ 등 리걸테크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리걸테크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융합인재를 육성하는 방안, ② 법률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직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 ③ 법률과 과학기술 분야의 가교 역할을 해줄 과학기술 분야 전공 출신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방안, ④ 리걸테크를 홍보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인력 확보 방안, ⑤ 부시(Busch) 교수님이 강조한 바와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함양을 위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리걸테크 시스템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인력 확보 방안 등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리걸테크 센터의 향후 활동방향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대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 론 문

김 도 엽 변호사

데이터 경제 시대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디지털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러한 변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패러다임의 일종입니다. 이는 라벨링 되지 않은 여러 응용 가능성이 있는 대량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습이 이루어진 모델을 말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해당 분야의 지식과는 무관하게 상당한 성능의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고, 단일화를 통해 효과적인 응용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이퍼 클로바, GPT-4 등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존재합니다. 물론, 파운데이션 모델에 관하여 신뢰성, 편향성, 공정성 및 환각 현상 등의 이슈제기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개선조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초거대 인공지능이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파괴적인 기술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해외 리걸테크 분야에서도 파운데이션 모델과 융합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 및 출시되고 있습니다.

위 파운데이션 모델 및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는 법조인 업무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외 자료 리서치, 판례 검색, 외국 문서 번역 등 다양한 업무에서 리걸테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조인은 리걸테크 서비스를 통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거나, 소송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실제로 해외로펌은 물론, 국내의 우수 로펌들이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쟁력 있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를 잘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그 결과물을 법리로 판단하고 검증하는 능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걸테크는 통한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접근성 증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걸테크는 법조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법조인의 조력을 받을 대상이 늘어나도록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리걸테크를 통해 국민에게 합리적 범위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금융 서비스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걸테크는 법률시장에서의 공급자와 수요자인 법조인과 국민에게 상호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범위 내에서 리걸테크의 전반적인 활용을 장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파운데이션 모델을 비롯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그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전 속도를 조절하지도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초거대 인공지능에 관한 플러그인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바, 국내 법률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서도 리걸테크를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 로스쿨에서는

데이터, 개인정보, 정보보호,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법률자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법리적 이해는 물론,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의뢰인과의 소통과 사안의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향후 법조인은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로스쿨을 통한 법, 기술 및 리걸테크에 대한 학습 및 이에 따른 합리적인 변호사 시험 체계를 논의할 때입니다.